

차 경 욱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은퇴가계의 자산구조변화 분석
-은퇴시점과 은퇴 5년후의 비교-

2010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가족문화·소비자학과
김 선 희

은퇴가계의 자산구조변화 분석
-은퇴시점과 은퇴 5년후의 비교-

차 경 욱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09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가족문화·소비자학과
김 선 희

認 准 書

김선희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개요

우리나라는 고령화가 급격하게 진행되어 온 반면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국제기구들이 우려를 나타낼 만큼 급격히 늙어가고 있다. 이렇게 평균수명이 증가하고 출산률이 감소함에 따라 노후생활이 장기화 되고 노인가계의 비율이 증가하였으며, 노인들이 겪는 사회경제적 문제 역시 증가하게 되었다. 특히 은퇴 후 소득감소로 인한 생활유지의 어려움은 노인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을 조사될 정도로 노후생활 유지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조기퇴직과 실업률이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노후기간 장기화에 따른 가계경제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은퇴는 소득과 소비변화는 물론 자산구조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가계생활사건 중 하나이다. 그러므로 은퇴 후 근로소득 감소를 예상하고 가계의 특성, 노후생활 유지기간, 현재 소득수준, 교육수준, 직업종류 등을 고려하여 재무자원을 배분하고 가계자산을 구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또한 은퇴 후에도 효율적인 재무관리를 통해 적절한 자산 구성을 유지함으로써,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은퇴시점의 소득 자산액과 그 구성비가 은퇴 5년후에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분석하고, 가계 특성에 따라 소득과 자산변화액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비교함으로써, 은퇴라는 생애사건이 가계의 경제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한국노동패널 1차~10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은퇴를 경험한 가계(n=288)를 대상으로 은퇴시점과 은퇴 5년후의 소득·자산 구조를 추적 조사하여 비교했으며, 이와 같은 연구분석을 위하여 빈도분석, t검정, 일원배치분산분석(ANOVA)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은퇴시점과 은퇴 5년후 전체응답자와 보유자간의 소득과 자산 규모를 비교한 결과, 전체조사대상자의 연간개인근로소득 평균은 은퇴시점이 약 1,199만원에서 은퇴 5년후 약 158만원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타가구원의 근로소득, 자산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이 은퇴시점보다 은퇴 5년후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은퇴자가 재취업 등을 통해 근로활동을 하기보다는 타가구원과 동거하거나 공적·사적 이전소득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거주부동산시가, 순자산도 은퇴시점보다 은퇴 5년후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개인근로소득만 유의하게 감소됨을 알 수 있다.

둘째,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실질소득과 실질자산액을 비교한 결과, 은퇴시점에 비하여 은퇴 5년후에 물가가 17.7% 상승하였다. 2000년의 화폐가치로 환산, 비교한 결과 실질근로소득이 은퇴 5년후에는 약 134만원으로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순자산, 공적이전소득과 사적이전소득의 경우 실질가치 환산후에도 은퇴 5년후 유의하게 증가하였고, 기타소득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은퇴시점과 은퇴 5년후의 소득과 자산의 구성비를 살펴본 결과, 개인근로소득은 은퇴시점에 총가계소득의 56.38%에서 은퇴 5년후에 5.83%로 감소하였고 나머지 타가구원소득, 공적이전소득과 사적이전소득, 자산소득 기타소득의 비율은 은퇴 5년 후에 확연하게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은퇴시점에 9.57%였던 이전소득은 은퇴 5년후에 36.89%로 늘어나 이전소득이 은퇴 후 차지하는 소득비율이 상대적으로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은퇴 5년후의 자산구성을 보면, 거주 부동산 비율과 거주외 부동산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 표현된 자산 구성비는 자산에서 차지하는 액수만 가지고 측정한 것이기 때문에, 은퇴시점에 비해 은퇴 5년후의 거주부

동산의 시가와 거주의 부동산 시가의 차지 비율이 늘어난 것으로 알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5년간의 부동산 시장의 전반적 상승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부동산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면, 유동성비가 떨어지기 때문에 노후에 장기적인 현금흐름을 창출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한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 저축을 위한 금융자산 축적과 노후생활에도 투자가 가능한 저축성 보험의 비중을 늘려나갈 필요가 있다.

넷째,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주된 일자리 특성에 따라 은퇴시점과 은퇴 5년후 사이의 소득과 자산변화액 차이를 비교한 결과 여성이 남성보다 은퇴 5년후 개인근로소득 변화액이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고, 남성이 여성보다 은퇴 5년후에 더 많은 공적이전소득 변화액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에 따른 차이로는 대졸이상이 다른 집단에 비해 은퇴시점보다 은퇴 5년후에 개인근로소득의 변화가 더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의부동산 시가는 은퇴시점보다 은퇴 이후에 고졸자 집단이 약4,593만원 정도 증가하였다. 또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금융부채와 부동산 부채 역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된 일자리 특성의 직업종류에 따른 변화액 차이는 개인근로소득의 경우 농어업직 종사자가 전문관리 직종에 비해 개인근로소득의 감소폭이 적었다. 전문·관리직종의 종사자는 자산소득 변화액과 공적이전소득 변화액이 다른 직종에 비해서 변화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과 자산의 변화는 주된 일자리 특성과 관련이 깊는데 특히, 고용상태가 비정규직인 응답자의 개인근로소득 변화액과 기타소득 변화액, 임대보증금 자산 변화액이 정규직 응답자보다 적었다. 반면 금융자산 변화액과 자산소득변화는 비정규직이 정규직에 비해 크게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본 연구는 은퇴시점과 은퇴 5년후 가계의 소득과 자산액변화를 분석함으로써, 중·고령자 가계에 은퇴 후 필요한 가계자산구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은퇴가계가 고려해야 하는 재무목표를 제시하여 바람직한 재무설계의 방안을 모색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또한 노후생활을 하고 있는 가계의 경제적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적 방안을 강구하는 데에도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나아가 본 연구는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은퇴 전 자산관리가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의 단초를 제공 할 것으로 기대한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1. 문제제기	1
2. 연구목적	5
II. 선행연구고찰	7
1. 은퇴의 정의	7
2. 은퇴가계의 경제구조 특성	10
1) 은퇴 전·후 소득과 소비의 변화	10
2) 은퇴 전·후 자산구조의 변화	13
3. 은퇴 전·후 가계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8
1) 연령과 은퇴연령	18
2) 교육수준	20
3) 성별	21
4) 배우자 유무와 가족원 수	21
5) 직업	22
III. 연구방법	24
1. 연구문제	24
2. 분석자료 및 연구대상	25
3. 측정도구의 구성 및 분석방법	26
.....	...

IV. 연구결과 및 분석	31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31
2. 은퇴시점과 은퇴 5년후의 소득과 자산액 비교	34
3. 은퇴시점과 은퇴 5년후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실질소득과 실질자산액 비교	40
4. 은퇴시점과 은퇴 5년후의 소득과 자산의 구성비 비교	44
5. 은퇴시점과 은퇴 5년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일자리에 따른 소득과 자산변화 비교	49
V. 결론 및 제언	58
1. 요약 및 결론	58
2. 제언	62

참고문헌

ABSTRACT

부록

표 목 차

<표 1> 측정도구의 구성	29
<표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32
<표 3> 조사대상자의 은퇴당시 주된 일자리 특성	33
<표 4> 은퇴시점과 은퇴 5년후 조사대상자의 소득과 자산액 비교 ...	38
<표 5> 은퇴시점과 은퇴 5년후 보유자의 소득과 자산액 비교	39
<표 6> 물가상승률 반영시 조사대상자의 소득과 자산액 비교	42
<표 7> 은퇴시점과 은퇴 5년후 물가상승률 반영시 보유자의 소득과 자산액 비교	43
<표 8> 은퇴시점과 은퇴 5년후의 소득과 자산의 구성비	48
<표 9>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소득 변화분 비교	53
<표 10>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자산 변화분 비교	56

그림 목 차

<그림 1> 은퇴시점과 은퇴 5년후의 유형별 소득비율	47
<그림 2> 은퇴시점과 은퇴 5년후의 자산보유 비율	47

I. 서론

1. 문제제기

21세기 인류의 가장 큰 위협으로 고령화 문제가 지적될 만큼 인구 고령화는 전 세계가 직면한 사회문제 중 하나가 되었다. 2008년 현재 우리나라 인구의 평균수명은 79.1세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의 평균 78.9세보다 0.2세 긴 것으로 집계되었다. 2001년 우리나라의 평균수명(76.4세)이 OECD 평균(77.7세)보다 1.3세 낮았던 것에 비하면 상당히 빠른 증가세라고 할 수 있다(보건복지가족부, 2008). 우리나라는 의료기술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고령화가 급격하게 진행되어 왔다. 2000년에 총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7%를 넘어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고, 2008년에는 10.3%에 도달하였다. 또한 2018년에는 이 비율이 14%로 높아져 고령사회가 되고, 2026년에는 21%이상으로 초고령 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통계청, 2008).

반면, 우리나라 가임여성의 출산율은 지난 20여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세계보건기구(WTO)의 세계보건통계(2008)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19명으로 193개 조사국 가운데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4세 이하 유소년층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을 나타내는 고령화 지수는 1980년 11.2% 이었으나 2008년 59.3%가 되었고, 2050년에는 429.3%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통계청, 2007). 국제통화기금(IMF)와 유엔 등 국제기구들이 우려를 나타낼 만큼 우리나라는 급격히 늙어가고 있다.

산업화, 핵가족화로 인한 저출산 현상은 기성세대가 그들의 노후를

자녀에게 더 이상 의존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통계청(2008) 자료에 따르면 자녀와 동거하고 있는 노인(65세 이상)의 비율이 2005년에는 39.9%, 2007년 38.2%로 감소하였다. 과거 한국인구보건연구원(1985)의 조사에서 노인의 자녀와의 동거비율이 79.5%로 조사되었고, 한국노인문제연구소(1993)의 조사에서 자녀와의 동거비율이 44.4%로 나타났던 것에 비하면, 노인의 자녀와 동거비율은 확연히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녀와의 동거율이 감소함에 따라 노인가구의 비율도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2004)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부부가구는 1999년에 16.9%에 비해 2000년에는 28.7%로 절반이상 증가했다. 또한 노인단독가구 역시 1990년에는 8.9%였던 것이 약 2배 가량 증가하여 2000년에는 16.2%로 조사되었다. 이렇게 평균수명이 증가하고 출산률이 감소함에 따라 노후생활이 장기화 되고 노인가계의 비율이 증가하였으며 노인들이 겪는 사회경제적 문제 역시 증가하게 되었다. 65세 이상의 남녀 노인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을 조사한 결과 은퇴 후 소득감소로 인한 생활유지의 어려움과 의료비 지출 증가로 드러났으며, 전체 취업노인의 87% 가량이 취업이유를 생계비 마련 등 경제적으로인 이라고 응답한 바 있다(보건복지가족부, 2008; 통계청, 2009). 즉, 노후생활을 유지하는데 있어 경제적 어려움이 가장 심각한 문제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고령화 문제와 더불어 고용시장불안이라는 또 하나의 요인이 노후생활의 경제적 문제를 야기한다고 볼 수 있다. 1997년 IMF 경제위기 여파로 인한 기업의 도산과 인력감축은 고용시장의 불안을 초래하여, 비자발적 실업자와 조기은퇴자를 양산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제 불황 하에 2007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글로벌 경제위기를 발생시켰고, 우리나라 역시 예외가 되지 못했다. 이

러한 경제 위기와 맞닥뜨리면서 근로자들이 한 직장에서 정년까지 근로하던 평생직장의 개념이 사라졌으며, 조기은퇴, 비자발적인 실업 등으로 인한 근로수명 단축과 근로소득원의 상실이 가계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통계청(2009)에 따르면, 고령층(55~79세)의 주된 일자리 근속년수는 20년 3개월이며 은퇴 평균연령은 53세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인구의 평균수명을 고려하면 26년 이상의 노후를 청장년기 근로소득의 일부로 생활해야 함을 의미한다. 게다가 사오정, 오륙도, 이태백과 같은 신조어가 생길 만큼 젊은 연령층의 조기퇴직과 실업률이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노후기간 장기화의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근로수명 단축으로 인한 중·고령 은퇴자들의 증가는 경제성장을 저하와 사회복지 재정지출 증가라는 사회적 문제와도 연결이 된다. 정부는 1988년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국민연금 의무가입을 제도화 하였고, 2005년부터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여 노후생활유지에 필요한 자금을 보장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국민연금의 재정고갈 문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우려되어 왔고,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은 임금근로자의 고용안정성이 보장되어야 그 실효성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개인차원의 노후준비가 불가피하며 노후생활의 만족 극대화를 위해서는 전략적 준비가 필요하다. 이러한 사회 경제적 변화로 인해 은퇴 이후 삶의 안정성 보장과 성공적인 은퇴 설계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2006)에서 실시한 노후대책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직장인들의 은퇴준비에 대한 개인들의 관심은 2003년 32.4%에 비해 2005년에는 2배나 높아진 64.6%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결혼과 주택마련, 자녀교육을 위한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 및 세금부담 등은 노후준비의 걸림돌이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한상공회의소, 2006).

가계는 가족생활주기에 따라 각기 다른 재무과업을 달성하기 위해 저축행동과 소비행동을 결정하기 때문에 자산의 구성도 변화하게 된다. Ando와 Modigliani(1963)의 생애주기가설에 따르면 가계자산은 은퇴 전 장년기까지 축적되어 오다가 은퇴 이후 조금씩 감소하는 양상을 보인다. 은퇴는 소득과 소비변화는 물론 자산구조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가계생활사건 중 하나이다. 그러므로 은퇴 후 근로소득 감소를 예상하고 가계의 특성, 노후생활 유지기간, 현재 소득수준, 교육수준, 직업종류 등을 고려하며 가계자원을 배분하고 가계자산을 구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대한상공회의소(2006)에 따르면 가계가 안정적이라고 생각하는 가계자산 구성비는 금융자산 45.8%, 비금융자산 54.2%로 조사되었지만, 실제로 우리나라 가계자산의 구성은 89.8%가 주택 등 비금융자산에 치우쳐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가계는 주거주택 보유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어, 가계자산구성을 부동산에 집중시키는 결과를 만들었다. 그러나 부동산 중심으로 짜여진 가계자산은 현금화가 어려워 노후생활 유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가족생활주기에 따라 적절하게 가계자산을 구성하고 관리하는 것은 빠른 사회경제적 변화 속에서 가계의 재무목표를 달성하고 재무안정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특히 은퇴는 가계의 자산구조에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이므로 은퇴 이후 가계자산구조의 변화를 예측하여, 이에 대비하는 자산관리 전략을 모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은퇴로 인한 소득감소가 부동산·금융자산 및 부채보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해 통합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드물다. 자료수집의 어려움으로 인해 은퇴 전과 은퇴 후의

가계자산구조를 비교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은퇴 전·후에 따른 자산구조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즉 은퇴시점에서의 자산구조와 은퇴 5년 후의 자산구조를 비교하여, 은퇴가계 자산의 변화 패턴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은퇴 후 자산변화의 특성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나아가 개선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또한 은퇴 전·후의 소득원과 소득수준, 지출수준을 비교함으로써 은퇴 후 소득지출구조의 특징을 분석하고, 은퇴가계가 소득창출을 위한 수단으로 어떤 준비를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에서는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은퇴시점과 은퇴 5년후 가계 자산구조의 특징을 비교함으로써, 은퇴 이후 노후생활의 자산구성 변화패턴을 파악하고 은퇴가계의 소득, 지출 구조와 투자행동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중·고령자 가계에 은퇴 후 필요한 가계자산구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은퇴가계가 고려해야 하는 재무목표를 제시하여 바람직한 재무설계의 방안을 모색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본 연구는 노후생활을 하고 있는 가계의 경제적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적 방안을 강구하는 데에도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나아가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은퇴 전 자산관리가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의 단초를 제공 할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은퇴시

점과 은퇴 5년후를 비교할 때, 소득과 자산액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둘째, 은퇴시점과 은퇴 5년후를 비교할 때,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실질소득과 실질자산액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파악하고자 한다. 셋째, 은퇴시점과 은퇴 5년후를 비교할 때, 소득과 자산의 구성비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본다. 넷째, 은퇴시점과 은퇴 5년후의 소득과 자산변화액은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파악한다.

II. 선행연구고찰

1. 은퇴의 정의

은퇴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는데 있어 은퇴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왜냐하면 은퇴를 정의하고 이해하는 방법이 다양하고, 단일화된 개념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은퇴(隱退)의 사전적 의미는 '직임에서 물러나거나 사회 활동에서 손을 떼고 한가히 지냄'으로 정의되어 있다(표준국어대사전, 2008). 이는 은퇴를 가장 오랫동안 근무한 직위나 사회활동에서 물러나는 것으로 노동시장에서의 이탈을 의미한다. 그러나 실제로 많은 선행연구들은 은퇴에 대해 매우 다양하고 상이한 정의를 내리고 있다(권문일, 1996; 한희자·장은실, 2001; 장지연·호정화, 2002; 박경숙, 2003; 최보아·지영숙, 2004; 김지경, 2005; 이지영·최현자, 2009; Tibbitts, 1954; Michell, 1972; Atchley, 1976; Parnes, Adams, & Andrisani, 1975). Mitchell(1972)은 은퇴가 개인의 생활방식이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정의되고, 심리적 상태에 따른 사회경제적 조건과도 부합되는 복잡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최보아, 지영숙(2004)의 연구에서는 은퇴에 대한 정의를 소득이 감소하고 사회적 역할이 축소되며, 정서적 변화와 신체적인 노화를 겪는 시기라고 보았다. 이는 은퇴가 사회경제학적 변화는 물론 심리 정서적으로도 많은 변화를 겪는 시기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고용시장의 불안과 경제위기로 인한 조기퇴직과 비자발적 은퇴율이 높아지면서 은퇴에 관한 개념적 정의는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권문일(1996)의 연구에서는 은퇴를 일정 시점에서 이루어지는 하나

의 사건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행해지는 하나의 과정으로 보았으며, 은퇴를 정의하는 데 있어 5가지 기준을 설명하였다. 즉, 응답자의 주관적 판단, 경제활동 참가여부, 노동시간과 임금수준의 급격한 저하, 생애 가장 오랜 기간 동안 근무한 직장에서의 퇴직, 공적연금 또는 기업연금의 최초 수급시점 등을 기준으로 은퇴를 정의하였다. 박경숙(2003)은 고령자의 노동시장 이탈과정을 통해 분석하였으며, 은퇴를 다(多)기간에 걸친 하나의 과정으로 보았다.

은퇴에 대한 정의를 응답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하여 정의한 방법으로는 Parnes 외(1974)의 연구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1947년과 1972년 55세와 64세 사이의 노동력이 있는 미국 남성을 대상으로 은퇴를 하였느냐는 질문을 직접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하면 은퇴자로 분류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근로자의 은퇴연령의 변화를 연구한 장지연과 호정화(2002)의 실증연구에서는 은퇴를 정의 하는 방법을 주관적인 방법과 객관적인 방법으로 분류하였다. 주관적인 방법으로 조사당사자에게 직접 질문을 하여 은퇴자를 분류하였고, 객관적인 방법으로는 일정연령이 지난 사람의 경제활동 참여 유무에 따라 은퇴자를 분류하여 은퇴에 대한 정의를 하였다.

Tibbits(1954)은 은퇴를 일자리의 상태에 따라 세가지로 분류하였다. 주된 일자리로부터 물러나는 것, 경력과 관련 없는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일자리로의 이직 그리고 가사활동과 여가활동이 중단된 상태로 나누었다. 노동시간과 임금수준이 급격하게 감소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하여 은퇴를 정의한 연구로는 Parnes 외(1974), Burtless와 Moffitt(1984)의 연구가 있다.

한편 Atchley(1976)는 주된 직장의 퇴직연금이 소득원이 되는 시기 즉, 직업경력이 중단되는 시기로 은퇴정의를 제한시켰고,

Campbell 와 Cambell(1976), Fields 와 Michell(1984) 역시 공적연금과 기업연금을 최초로 수급하는 시점을 가지고 은퇴를 정의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기초노령연금 수급시점이 만65세이고, 금융권에서 가입하는 개인연금도 1994년 도입되었을 만큼 공적연금의 역사가 짧기 때문에 이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정의한다면, 은퇴자 수가 현실보다 크게 축소 산정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연령에 따라 은퇴의 기준을 정할 경우, 고용자촉진법은 “고령자”를 55세 이상, “준고령자”를 50세 이상 55세 미만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정하는 경우에는 정년을 60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다. 이와 같은 관련법을 근거로 은퇴를 정의할 경우 50세 이상을 은퇴인구로 추정해야 하는지 60세 이상을 추정해야 하는지 그 기준이 모호해진다(김지경, 2005).

이처럼 은퇴에 대한 정의가 연구자의 견해에 따라 다를 뿐 아니라, 사회경제적 환경과 응답자의 개인적 환경에 따라 은퇴시기와 개념에 차이가 있어 은퇴의 정의를 분명하게 설명하기란 쉽지 않다.

은퇴에 관한 국내 선행연구들은 주로 한국노동패널자료를 사용하였다(박경숙, 2001, 2003; 장지연, 2002; 김지경, 2004; 안종범·전승훈, 2004; 이정원, 2006; 이지영·최현자, 2009). 따라서 대부분의 연구들에서 한국노동패널자료에서 정의한 은퇴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한국노동패널 조사에서는 조사시점에 은퇴정의를 ‘본격적인 소득활동을 그만두고 조사당시 시점에 일을 하지 않고 있거나 소일거리 정도의 일 이외의 일을 할 의사가 없는 상태’로 제한하여 은퇴자를 정의하였다. 한편 한국노동패널 6차년도(2003)에는 중·고령자부가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이 자료에서는 응답자의 주관적 평가를 이용하여 은퇴여부를 구분하였다. 김지경(2005)은 한국노동패널 6차년도(2003) 중·고

령자 부가조사자료가 정의한 은퇴개념이 우리나라의 짧은 공적연금의 역사, 개인의 주관적 평가와 현재의 주된 경제활동참가여부, 그리고 노동시장의 경험이 반영된 적절한 정의라고 주장했다. 본 연구 역시 한국노동패널 6차년도(2003) 중·고령자부가조사의 정의에 근거하여 은퇴자들을 분류하였다.

2. 은퇴가계의 경제구조 특성

Haveman 외(2006)는 은퇴 전 소득을 기준으로 은퇴 후 경제적 복지를 위한 은퇴자산의 보유여부와 정적성을 분석한 결과, 조사대상 은퇴자의 30%가 노후생활의 경제적 복지를 위해 충분한 자산을 보유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수명의 증가로 은퇴 후 노후생활이 길어지고, 1990년대 후반 경제위기이후 조기은퇴가 증가함에 따라, 안정된 노후생활을 유지하고자 하는 욕망을 가진 근로자들은 은퇴설계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다. 삼성경제연구소(2007)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조사대상 가구의 69.5%가 노후에 대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준비를 하는 가구는 노후준비자금으로 월평균소득의 10%미만을 국민연금(21.9%), 개인연금(20.9%), 부동산(20.1%), 보험(17.1%), 은행예금 및 적금(11.8%)에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렇게 은퇴설계를 하는 것은 은퇴 후 노후생활 기간의 증가와 은퇴 후 소득의 감소, 노후의 건강문제 등 불확실성에 대비한 예비적 동기로 설명할 수 있다.

1) 은퇴 전·후 소득과 소비의 변화

은퇴가 주는 의미는 가계에 따라 다르지만, 은퇴가 개인과 가계에

미치는 가장 큰 영향은 생애 주된 일자리로부터 물러나는 것과 노동 시장을 반영구적으로 이탈하면서 발생하는 근로소득원의 상실이다(권문일, 1996). 많은 선행연구에서 은퇴로 인한 가계의 재정상태 변화에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은퇴후 수입을 제시하였다(Grad, 1990; Schulz, 1992). 은퇴로 인한 근로소득의 감소는 가계소비가 은퇴 전과 동일하게 유지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Ando 와 Modigliani(1963)의 생애주기가설에 의하면, 개인은 전 생애에 걸쳐 안정된 소비활동을 유지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소득이 많은 시기에 저축을 하고, 소득이 부족한 노후에는 저축을 이용한다. 즉, 소비를 일정히 유지함으로써 일생동안의 효용극대화를 위해 합리적 행동을 한다는 것이다.

반면, 가계가 일정한 소비패턴을 유지한다는 생애주기가설에 상반되는 주장도 있다(Banks, Blindell, & Tanner, 1998; Bernheim, Skinner, & Weinberg, 2001). 즉 은퇴후 급격한 소비감소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Banks, Blindell와 Tanner(1998)은 은퇴 후 소비 감소를 예상하지 못한 충격의 결과라고 언급하였고, Bernheim, Skinner와 Weinberg(2001)는 저축자산과 은퇴 후 소비생활은 일정한 관계가 있지 않으며, 생애주기가설과 은퇴 후 소비생활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은퇴 전·후 가계의 소비 변화를 분석한 실증연구에서 은퇴 후 소비의 감소 현상이 나타났고, 그 원인으로 소비지출의 가계내 생산으로의 대체, 노동관련 지출 감소 등을 설명하였다(방하남 외, 2009).

안종범과 전승훈(2003)은 은퇴와 관련하여 소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조기은퇴에 대한 결정을 언급하였다. 그들은 조기은퇴 결정이 은퇴 전 소비에 영향을 미쳐서 조기은퇴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않

아도 되는 상태와 비교했을 때 소비를 줄이게 되는 효과를 보인다고 밝혔다. 즉 조기은퇴결정이 은퇴기간의 증가를 고려하는 효과를 일으켜 저축을 증가시키고 소비를 줄이는 것이며, 결국 저축의 증가가 소비감소로 이어지는 결과를 낳는다고 제시하였다.

한편, 은퇴 후 소득 감소에 따라 소비변화를 분석한 An(2003)의 연구에서는, 한국노동패널자료를 이용하여 동일 가구의 은퇴 전 소비와 은퇴 후 소비를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은퇴 후 소비는 은퇴 전 소비의 99.4%로 거의 차이가 없음을 발견했고, 안중범과 전승훈(2003, 2004)에서도 은퇴 전·후 소비의 변화의 차이가 없다는 결과를 제시하기도 하였다. 노동패널 자료를 사용하여 한국의 은퇴후 소비감소를 밝힌 방하남 외(2009)은 미국·영국 등과 비교했을 때 한국의 은퇴후 소비감소 폭은 작은 것을 지적하였다. 가구주 및 가구 특성을 통제하여 은퇴후 소비변화를 추정 할 경우는 오히려 은퇴가 소비를 증가시킨다고 언급하였다. 그들은 은퇴로 인한 근로소득의 상실로 소득의 감소와 소비의 감소가 일어나긴 하지만, 그것이 다른 외부 사회경제적 요인과 은퇴시기를 전후로 일어나는 가구주 및 가구특성의 변화에 의한 것일 수도 있음을 시사하였다. 이러한 특성을 통제할 경우에 한국 가구주의 은퇴는 가계소비를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음을 제시하였으나 증가규모는 미미한 것으로 밝혀졌다. 은퇴결정과 관련하여 소비수준을 증가시키는지 감소시키는지에 대한 분석도 실시되었다. 조사대상을 정규은퇴자와 조기은퇴자로 분류하여 분석한 결과, 은퇴결정으로 인해 은퇴전 가계의 소비가 감소하고 은퇴 후에는 오히려 소비가 증가하는 효과를 밝혔다.

안정적 소득원 보장은 은퇴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수적이다. 소득보장이 은퇴후 생계와 직결 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이다. 노후

의 생활소득원이 될 수 있는 것은 가족부양에 의한 생활유지와 근로 소득, 연금, 저축, 부동산을 포함한 자산소득,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등이 있다(김익기 외, 1999). 심영(2000)은 단독노인가계의 소득, 자산, 소비지출을 분석하였다. 노인가계의 소득원 중 개인적 부조를 받는 가계가 70.6%으로 이 중 68.1%가 자녀로부터 소득을 얻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산소득이 있는 가계는 24.1%, 공적부조를 받는 가계는 17.4%로 나타났다. 통계청(2004)에 따르면 2002년의 만60세 이상 가구원의 생활비나 용돈 마련방법은 본인 및 배우자 부담이 55.9% 자녀 또는 친척지원이 40.9%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비율은 연령이 높을수록 본인 및 배우자 부담은 낮아지고 자녀 및 친척에 의지하는 비중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노인들은 아직까지 경제적으로 자녀에게 생활 소득을 의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 은퇴 전·후 자산구조의 변화

유우정(2005)은 소득, 자산, 소비지출의 측면에서 노인가계의 자산 구성에 관해 분석하였다. 노인가계의 자산구성은 공통적으로 은행 보유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안전자산에 투자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금융자산보다 부동산자산의 비중이 높고 전체 조사대상가구의 절반 이상이 은행에 저축한 자산과 자가 주택을 제외하고는 다른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노인가계의 자산구성에 다양성이 결여 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생애주기에 따른 가계의 투자계획을 살펴본 범수인과 문숙재(1992)는 은퇴 노인가계의 경제구조 분석 조사에서 은퇴 노인가계 총자산의 90%가 실물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그 실물자산의 대부분은 거주 주택이었다고 보고하였다. 남상호, 권순현(2008)도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한 연구에

서 우리나라 중·고령자 가계의 순자산이 거의 부동산 자산에 집중되어 있고, 금융자산과 기타자산은 점유비중이 낮음을 분석했다. 또 순자산의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부동산 자산의 유형으로는 거주주택이 60%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특징을 김경아(2007)는 우리나라 가계가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이유 때문이라고 하였다. 또, 외환위기 이후 한국가구의 안전금융자산 비율을 추정한 조사결과, 외환위기 이후 노후생활준비와 경제적 불안정성 심화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자산인 부동산을 보유하려는 성향을 밝혔다.

박창균(2003)은 고령화 진전에 따른 자산수요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결과 우리나라 노인층의 자산보유 수준은 미국에 비해 매우 낮으며, 30대 보다 40대 이후 연령층의 금융자산의 비중이 낮은 이유를 일반적으로 30대 초반 이후 주택구입을 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은퇴 후 자산변화는 노인가계의 경우와 비슷한 유형을 띄고 있으며, 보다 안전자산인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음을 선행연구를 통해 알 수 있다.

임재용(2008)의 연구에 의하면 적절한 노후 준비시기를 35세-39세라고 하였다. 그러나 실증 조사결과 이 연령대의 응답자들의 60% 이상이 노후대비책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현실적으로는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시기가 40대 이후의 중년기가 적당하다고 하였다. 중년기 직장 남성을 대상으로 한 이지은(2000)의 연구에서 40대보다 50대가 노후 경제생활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비율이 높았다. 중년기는 다른 생애주기에 비해 자녀가 어느 정도 성장하고 경제적으로 가계가 안정기에 속하기 때문에, 은퇴준비를 하고 노후생활에 대한 대책을 미리 준비해야 하는 과업을 가진다(배문조, 2009). 그러나 현실적

으로 노후에 대한 충분한 준비가 되어있지 못하다. 삼성경제연구소(2007)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조사대상 가구의 69.5% 노후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지만, 노후를 준비하는 가계의 78.9%는 현재의 노후대비가 은퇴후 생활에 부족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응답하였다. 노후대책을 위한 수단으로는 국민연금(21.9%), 개인연금(20.9%), 부동산(20.1%), 보험(17.1%) 은행예금 및 적금(11.8%)로 조사되었다. 조용수와 김기승(2007)의 연구에서 한국노동패널자료 분석결과 60대 이상에서 빈곤율이 급증함을 지적하였다. 그의 연구에서 2004년의 경우 60대 이상 고령자 가구의 47%정도가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기초생계비보다 낮은 수준으로 생활하는 가구로 드러났다. 이들 가구의 비율은 다른 연령대 가구와 비교했을 때보다 3배 이상 높고, 50대 가구와 비교해도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Yhu와 Devaney(1996)의 연구에서는 순자산액이 증가할수록 가입 연금의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Schulz(1992)는 노인기 가계와 비노인기 가계를 대상으로 비교분석한 결과, 노인기 가계는 근로소득이 중단되는 대신 연금이나 자산소득 또는 기타소득을 보유함으로써 생활을 유지시킨다고 하였다.

김연정(1998)은 은퇴가계와 취업노인가계를 대상으로 소득, 지출 및 자산을 비교 분석한 결과, 친척 및 가족에 의한 사적이전소득이 공적이전소득보다 많았다. 공적이전 소득이 은퇴가계의 안정적인 수입원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은퇴후 가계는 근로소득의 기회가 줄기 때문에 부족한 소득원을 대체할만한 수단이 필요하다. 축적된 자산소득은 또 다른 소득 창출요인이 되기도 한다. 이는 은퇴 가계에 있어 자산소득이 불확실한 근로소득보다 훨씬 더 안정적이며, 은퇴 전 소비를 유지하는 데 있어

중요한 수단이 된다. 이철용(2006)의 은퇴후 필요노후자금 산정에 관한 연구에서, 은퇴후 가계가 근로소득의 감소로 부족한 소득원을 대체하기 위해 과거 소득활동에서 형성된 부동산 및 금융자산을 노후 재원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지적했다. 이런 이유로 특히 30-40대의 정확한 필요노후자금 측정을 위해서는 미래 소득을 산정하는 것 외에 과거 소득활동에서 형성된 부동산과 금융자산을 포함 시켜야 함을 강조하였다. 여윤경(2006)은 통계청의 2001년 가구소비실태조사를 이용하여 40-50대 가계를 대상으로 비금융자산의 노후소득 활용 효과를 소비대체비율을 통해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노후소득으로서 비금융자산이 총자산의 56%를 차지하고 자산계층에 따라 비금융자산과 금융자산의 비중이 상이 함을 언급하였다. 비금융자산의 노후소득활동의 효과는 가계마다 상이하지만 거주주택을 노후 소득으로 사용할 경우 평균 소비대체율은 27%였고 최고자산 계층의 경우에는 5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2006)의 가계자산조사결과 우리나라 가구주의 연령별 자산보유현황은 50대 이상의 자산규모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형태별 보유비율은 금융자산과 기타자산은 연령대가 낮을수록 부동산 자산은 연령대가 높을수록 총자산에 대한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김연정(1998)은 한국가구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은퇴 노인가계와 취업노인가계의 소득, 지출, 및 자산을 비교 분석한 결과 은퇴 노인가계의 총 소득은 취업 노인가계보다 적음을 밝혔다. 그러나 오히려 은퇴가계가 취업노인가계보다 자산규모는 더 많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는 취업노인가계의 대부분의 근로소득 생활비로 지출된 것은 노후생활을 위한 적절한 자산축적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희숙, 신상미(2003)는 은퇴노인가계와 취업노인가계의 총소득을 비교하였다. 은퇴노인가계가 취업노인가계에 비해 이전소득에 의존도가 높으며 은퇴노인가계가 비은퇴노인가계보다 경제적으로 더 열악하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은퇴가계가 자산소득, 이전소득, 비근로소득 및 의료비, 총자산 실물자산액과 순자산을 취업 노인 가계에 비해 더 많이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와 같은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은퇴에 따른 변화를 추론해 보면 은퇴 이후 근로소득은 감소하는 반면, 자산소득과 사적이전소득 및 공적이전소득의 비중이 증가하여 노인가계의 소득원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대부분의 은퇴가계가 실물자산이 총자산의 대부분을 구성하였고, 그들이 보유한 금융자산 비중은 안전자산에 대한 투자비중이 상당히 큰 것으로 드러났다.

대부분의 은퇴 관련 연구에서 은퇴 후 수입이 노후생활과 관련된 중요한 요인으로 제시되었다(Schulz, 1992; 성영애,1994). Torrey 등 (1986)은 노인시기와 비노인시기의 소득과 지출구조의 차이에 대해 노인들도 저축을 할 만큼의 소득원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고 한 반면, Radner(1987)는 노인기에 부의 저축이 이루어진다는 상반된 결과를 제시하였다(Schulz, 1992에서 재인용)

Moehrle(1990)은 노인의 취업 여부에 따른 소비지출 패턴을 분석한 결과, 저소득층 취업노인가계가 비취업노인 가계에 비해 25%의 더 큰 소비 규모를 보였고 Rubin와 Nieswaidomy(1994)도 취업가계와 은퇴가계로 분류하여 소비지출 패턴을 분석한 결과 노인의 취업여부가 소비지출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로 밝혀졌다. 많은 연구에서 노인가계를 취업여부에 따라 분류하거나 은퇴가계와 비은퇴가계로 나누어 소득과 지출 등 경제적 상황을 분석하였다(Schulz ,1992). 문숙

재, 김순미, 김연정(1996)는 노인가계와 비노인가계의 재정상태를 비교하여 은퇴 후 소득원을 분석한 결과, 또한 근로소득의 상실이 가계 경제복지에 영향을 주는 요인임을 분석하였다. 김태일(2007)은 은퇴 후 근로소득의 감소는 공적연금과 기업연금으로 소득이 대체되어 노후생활의 소득원이 된다. 공적연금이 노후 소득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공적연금이 노후소득보장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근로동기를 감소시키는 것을 밝혔다.

3. 은퇴 전·후 가계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은퇴로 인한 가계경제구조 변화를 살펴 본 선행연구들은 대체로 은퇴자 집단을 대상으로 하여 노후생활을 위한 자산의 적정성을 평가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연구한 것들이 많다(Haveman 외, 2006; 백은영, 2008) 주요 변수로는 연령, 교육수준, 고용기간, 연금보유, 주택보유, 은퇴 전 일자리 고용형태, 각 유형별 소득 또는 자산의 보유 등이 은퇴 전·후 소득대체율과 노후생활의 지속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 연령과 은퇴연령

선행연구에서 연령은 가계자산보유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Kennickel, 1994; 강석훈, 1998; 문숙재, 정순희, 여윤경, 2002; 임경묵, 2002). 통계청(2006)의 가계자산조사결과 우리나라 가구주의 연령별 자산 보유현황은 50대 이상의 자산규모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형태별 보유비율은 금융자산과 기타자산은 연령

대가 낮을수록 부동산 자산은 연령대가 높을수록 총자산에 대한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강석훈(1998)은 가구소비실태조사 1996년 자료를 분석하여 총 금융자산과 순금융자산은 모두 가구주의 연령이 50-54세 일 때 가장 많음을 언급하였다. 그리고 전체 응답가구 중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가계가 20%를 차지하며, 무직가구와 노인가구가 상대적으로 많은 금융자산 및 순금융자산을 보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은, 은퇴기에는 소득상실과 관련한 유동성의 제약에 대비하여 안전자산을 선호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Siverd(1986) 역시 은퇴에 따른 소득상실에 대비해서 소득원이 될 만한 안전자산을 보유를 더 선호하게 된다고 하였고, Kennickell 등(1994)은 가계자산의 보유는 45-54세와 55-64세에 자산이 가장 많고 이를 통해 생애주기가설을 증명하였다. 한편, 임경묵(2002)의 연구에서, 연령별 금융자산 규모를 분석한 우리나라 가계의 금융자산 축적은 40대까지 증가하다가 그 이후 감소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나타났다.

문숙재, 정순희, 여윤경(2002)은 1996년 가구실태조사를 이용하여 가계순자산규모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가구주 연령별 자산 변화는 총자산과 순자산 모두 가구주 연령이 50대 일 때 최대가 되고 60대 이상에서는 50대에 비해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은 투자유형 및 순자산의 보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퇴 후 노후 소득과 연령이 높아질수록 소득이 낮아지는 부(-)적 관계를 나타냈다(석재은, 김태완 2000). Ramaswami(1992), Weagley 와 Gannon(1991)은 자산수준과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자산 구성의 차이를 살펴보았는데, 가구주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위험자산을 더 보유하다가, 퇴직에 가까워지면 위험자산을 줄인다는 결과를

보였다. 임경목(2004)은 주주명부를 바탕으로 연령별 주식시장참여율을 분석하였는데 2000-2001년 주식시장 참여율이 가장 높은 집단은 45세-49세, 40세-44세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60세 이상의 주식시장 참여율은 8% 정도로 20대 보다는 높았지만, 다른 연령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가계자산의 취약성이 심화되는 현상을 보였으며, 수익성이 큰 위험자산 보다는 저축 및 예금 같은 안정적인 자산을 선호하여 투자자산 보유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가계를 연령 혹은 가계유형에 따라 분리하여 분석한 연구들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가계의 경제구조가 취약해진다고 보고하였다(김순미, 1998; 양세정·성영애, 2001). 또한 Wang, Moc & Fox(1995)의 은퇴가계과 취업가계의 소득비교에서, 은퇴한 노인가계에 비해 취업한 노인가계 평균가구주 연령이 더 적어 가계의 근로소득액은 취업가계가 더 많고, 근로소득 외에 자산, 이전소득은 은퇴가계의 보유액이 더 많다고 하였다.

2) 교육수준

많은 선행연구들(Leno, 1985; Maxwell, 1986; 성영애, 1994)이 인적 자본과 노동시장 참여의 직접적인 관련을 밝혀낸바, 높은 교육수준은 소득증가의 주된 원인이 된다. 또한 은퇴 전의 높은 소득수준은 은퇴 후 소득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고졸이상의 은퇴자가 고졸미만의 은퇴자에 비해 은퇴 후 소득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문숙재 외, 1996). 특히 가장의 교육수준에 따라 가계저축이 정적인 관계를 보였다(이계식, 1986; 양정선, 1992; 정은주·문숙재, 1992).

한편, 교육수준과 부채는 대체로 부적의 관계를 갖는다고 많은 선

행연구에 나타났다(Steidle, 1994; Lin & Devaney, 1996; 문숙재 외, 1996).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높은 소득과 좋은 직업으로 인해 부채 이용의 기회가 증가하는 반면 부채획득 보다 높은 교육수준이 소비 자제력을 향상시켜 부채이용을 감소시킨다고 하였다.

김인숙(1993)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노후에 대한 경제적 계획을 세우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은퇴 후 재정 계획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성별

직업선택과 근로조건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노동시장에서 남녀간 경제적 지위에 차이가 있으며 이것이 은퇴 후 소득에도 영향을 미친다. Abbot(1977)는 노동시장에서의 차별이 근로경력의 단절 또는 경력 차이의 원인이 되고 생애 주된일자리에서의 근속기간과 직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하였다. 국내의 연구에서 김지경(2005)은 성별에 따른 은퇴사유와 은퇴 후 소득을 비교했지만, 여성응답자의 73%가 초등학교 이하의 학력수준이었기 때문에 여성의 인적자본효과는 드러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심영(2000)은 소득과 자산 분석을 통해 노후생활의 경제적 측면을 평가한 결과 남자노인가계가 여자 노인가계에 비해 더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심영, 2000).

4) 배우자 유무와 가족원 수

심영(2000)은 유배우 노인가계는 남자단독 혹은 여자단독 노인가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제복지 수준이 높다고 하였다.

가족원의 수는 가족자원의 분배와 사용 및 관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간주 되어 왔는데, 권문일(1996)은 대졸 자녀수에 따른 퇴직 후 경제활동 참가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대졸 자녀수가 많을수록 교육비 지출 부담이 크기 때문에 노후를 위해 충분한 재정 자원을 축적할 여유가 없고, 그렇게 때문에 퇴직 후에도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권문일(1996)은 특례노령연금을 받는 남성노인을 대상으로 한 실증연구에서 가족 간의 화폐이전과 취학 자녀수가 노인의 퇴직결정에 영향을 준다고 제시했다.

김관영(1989)은 생애주기에 따른 저축행태를 분석하였다. 생애주기 모형을 사용하여 자녀의 교육비 부담이 무자녀가구와 유자녀 가구의 자산축적 경로에 있어 차이가 존재함을 밝혔다. 유자녀가구의 경우 무자녀가구에 비해 자녀의 교육비로 인해 소비가 급상승하게 되어 자산축적곡선이 완만하다고 분석했다.

많은 선행연구에서 우리나라 가계저축률이 U장 형태를 나타내고 있음을 밝혔다(조희금,1984; 양정선 외 1992). 저축률이 가족형성기에 가장 많고 자녀대학교육기까지 낮아지다가 그 이후에 증가하는 형태를 보였다. 조희금(1984)은 가계저축은 가장과 막내자녀의 연령과 상관관계가 높고, 가장의 연령과 저축률- 저축액을 소득액으로 나눈 것의 관계를 보면 대체로 연령과 저축의 부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직업

직업과 관련하여 은퇴자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들로는 직업지위, 직종, 직업안정도 등 다양하다.

Hardy(1980)는 관리직, 자영업자, 전문직 종사자들이 다른 직업군에 비해 노동시장에서의 수명 길다고 하였다. 직업군의 차이가 근속년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직업에 대한 안정도를 측정하는 또 다른 방법이라고 하였다. 김성숙과 박운아(1992)는 남편의 직업이 전문·관리직인 가계가 사무직인 가계에 비해 경제적 노후준비를 일찍 시작기 때문에 노후 자산관리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고 밝혔다.

또한 차경옥 외(2007)는 직업의 유형이 직업의 안정성 및 근로소득액 수준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나아가 퇴직연금 수령과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은퇴 후 노후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라고 하였다.

반면, 문숙재와 김연정(1997)의 연구결과 개인연금 보유할 가능성은 임금근로자에 비해 자영업자가 개인연금을 보유할 확률은 높았지만 개인연금의 보유액은 직업종류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Cohen 외(1975)에 따르면 직업의 종류가 위험자산 투자비율에 유의한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배무기(1975)는 가구주 직업에 따른 저축률을 살펴본 결과 사무직, 생산직 운수 장비, 운전자 및 단순 노무자 집단은 저축률이 낮았으나 전문기술직, 관리직 집단의 저축률은 높음을 분석했다. 이정현(1994)은 광주 및 전남지역과 전국 도시가계 연보를 사용하여, 자영업자 집단은 저축률이 높고 금융자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나 위험자산의 비율은 낮음을 밝혔다. 반면에 일용근로자 집단은 저축률이 낮고 금융자산도 작으나, 위험자산의 비율은 높은 특징을 보였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는 가계의 소득과 자산 규모 및 구성이 은퇴시점과 은퇴 5년후에 어떻게 변화하는지 비교하고 은퇴라는 생애사건이 가계의 경제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은퇴를 준비하는 가계에 재무적 정보를 제공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바람직한 재무설계의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설정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은퇴시점과 은퇴 5년후를 비교할 때, 소득과 자산액은 어떻게 변화했는가

【연구문제 2】

은퇴시점과 은퇴 5년후를 비교할 때,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실직소득과 실질자산액은 어떻게 변화했는가.

【연구문제 3】

은퇴시점과 은퇴 5년후를 비교할 때 소득과 자산의 구성비는 어떻게 변화했는가.

【연구문제 4】

은퇴시점과 은퇴 5년후의 소득과 자산 변화액은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2. 분석자료 및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 사용한 분석자료는 한국노동연구원의 한국노동패널(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KLIPS) 2차(1999년)부터 10차(2007년) 자료이다. 이 자료는 비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가구와 가구원을 대표하는 패널표본구성원(5,000 가구에 거주하는 가구원)을 대상으로 1년 1회 추적조사 하는 종단면조사(longitudinal survey) 자료이다. 경제활동 및 노동시장이동, 소득활동 및 소비, 교육 및 직업훈련 사회생활 등에 관한 내용을 조사하고 있다. KLIPS 자료는 크게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가구용 자료와 가구에 속하는 만15세 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개인용 자료로 구분된다. 가구용 자료의 내용은 가구원에 대한 정보와, 주거상태, 가구의 소득과 소비, 가구의 자산과 부채 등 가구의 경제 상태에 관련한 항목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개인용 자료는 개인의 경제 활동 상태 소득활동 및 소비, 교육 및 직업과 관련한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본 연구는 은퇴를 기준으로 은퇴시점과 은퇴 5년후의 소득과 자산액의 변화를 비교 분석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의 목적에 맞는 연구대상을 선정하기 위하여 몇 단계의 작업을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의 구체적 선정과정과 자료수집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노동패널 6차 조사(2003)에서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부가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은퇴여부를 묻는 문항에 대해 '은퇴하였다'라고 답한 응답자를 선정하였다. 한국노동패널에서 정의하고 있는 은퇴의 개념은 '주된 일자리에서의 소득활동을 그만 둔 상태로 소일거리 정도의 일을 하고 있고, 그 일 이외의 일을 할 의사가 없는 상태'를 의

미한다.

둘째, '은퇴하였다'라고 답한 응답자 중에서 은퇴시점이 1999년부터 2002년 사이인 응답자를 선정하였다. 본 연구는 은퇴시점과 은퇴 5년 후의 가계경제구조를 추적, 비교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은퇴시점에서의 표본 크기가 어느 정도 확보되어야 함은 물론 해당 표본이 5년 후에도 존속되어야 한다. 그런데 한국노동패널 부가조사를 통해 각 년도에 은퇴한 조사 대상자 수를 파악해 본 결과, 1999년 72명, 2000년 79명, 2001년 86명, 2002년 112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특정 한해의 은퇴자만을 표본으로 선정하여 그들의 5년 후를 추적조사하기에는 표본의 수가 너무 적다고 판단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불가피하게 1999년부터 2002년까지 은퇴한 모든 표본을 합쳐서 349명의 조사 대상을 확보한 후, 4년간의 물가상승을 반영하기 위해 소비자물가지수(CPI)를 이용하여 모든 소득 및 자산액을 2000년의 화폐가치로 조정하였다.

셋째, 은퇴시점의 표본 349명 중에서 은퇴 5년 후의 모든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표본을 확인한 결과, 총 288명의 조사대상이 추출되었다. 은퇴 5년 후의 자료는 각 표본의 은퇴시점에 따라 2004년부터 2007년 사이에 해당하게 되는데, 이 역시 4년간의 물가상승률을 조정하기 위하여 모든 소득 및 자산액을 2005년의 화폐가치로 환산, 적용하였다.

3. 측정도구의 구성 및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조사대상자를 은퇴시점과 은퇴 5년후 두가지 시점으로 나누어 소득과 자산액의 변화를 살펴보고,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실질소득과 실질자산액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을 위해 기술통계 분석을 수행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값, 표준편차를 산출 하

였고 t-검증을 수행하였다. 또한 두 시점의 소득과 자산의 구성을 비교하고, 두 시점의 소득과 자산 변화액이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주된 일자리 특성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비교하기 위해 t-검증, ANOVA 분석을 실시했다.

먼저,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는 성별, 교육수준, 은퇴시기, 은퇴연령, 가구원수, 배우자 유무, 주거형태를 살펴보았다.

일자리 특성으로는 한국노동패널 6차 중·고령자 부가조사에서 정의한 것에 근거하였다. 현재하고 있거나 과거에 했던 일 중에서 가장 오랜 기간 근무한 것을 주된 일자리로 정의 하였고, 이를 기준으로 일자리의 산업, 직종, 종사상 지위, 고용형태, 주된 일자리 근속년수, 주된 일자리의 월평균 임금(은퇴시기 전년도 월평균 임금)특성을 살펴보았다.

소득과 자산관련 특성은 가구단위로 조사되었으며, 조사시점(은퇴시점) 전년도의 연간총액으로 측정되었다. 소득은 크게 근로소득, 자산소득, 이전소득, 기타소득 4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근로소득은 개인소득과 본인을 제외한 타(他)가구원 소득으로 조사되었다. 자산소득은 금융소득과 부동산소득으로 측정되었고, 이전소득(공적이전소득+사적이전소득)과 기타소득(퇴직금+증여+상속+재해보상금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지출은 가구단위로 측정된 월평균 생활비에 12를 곱하여 이용하였다. 세부 지출항목의 경우, 은퇴 5년후의 자료에는 포함되어 있었으나, 은퇴시점에서 조사되지 않아 본 연구에서는 연간 총가계 지출만을 사용하였다.

은퇴시점과 은퇴 5년후의 자산액의 보유상태를 분석하기 위하여 자산, 부채, 순자산(총자산-총부채) 살펴보았다. 자산은 금융자산과 부동산자산으로 분류하였다. 금융자산에는 저축·투자자산(은행예금+주

식, 채권 및 신탁+저축성보험+아직타지않은 계+다른사람에게 빌려준 돈)과 임대보증금을 포함하였고, 부동산 자산에는 거주주택의 시가 및 거주외(外)부동산의 시가 총액을 포함하였다. 부채는 금융기관 및 비금융기관의 부채액, 개인적으로 빌린 돈, 미리타고 앞으로 부어야 할 계 등의 금액을 포함한 금융부채와 거주주택의 임대보증금과 거주주택이외 임대한 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을 포함한 부동산 부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분석에 사용한 측정도구의 구성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표 1> 측정도구의 구성

인구 사회 학적 특성	성별	남성/ 여성		
	교육수준	중졸이하/ 고졸/ 대졸이상		
	은퇴시기	1999년~2002년		
	배우자 유무	있음/ 없음		
	주거형태	자가/ 전세/ 월세/ 기타		
	가구원 수	평균 가구원 수		
주된 일자 리 특성	산업	농어업/ 제조업/ 전기가스·수도업·건설업 도소매업/ 숙박·운수·통신업/ 서비스업(금융·임대·오락·가사)		
	직업	전문·관리직/ 사무·판매·서비스직 농어업직/ 기능·기술직/ 단순노무직		
	종사상지위	임금근로자/ 자영업자/ 무급가족봉사자		
	고용형태	정규 / 비정규		
	근속년수	평균 근속연수		
	월평균 임금	은퇴시기 전년도 월평균 임금		
경제적 특성	소득	근로 소득	개인	월평균 임금 * 12개월(연간 근로소득)
			타가 구원	가계근로소득 - 개인근로소득
		자산소득		금융소득(금융기관 및 비금융기관 이자 배당금) 부동산소득
		이 전 소득	공적	사회보험 및 정부보조금
			사적	친척, 친지보조금, 따로사는 자녀 보조금
	기타소득		퇴직금, 증여, 상속, 재해보상금, 축의금 및 조의금	
	지출	생활비	월평균 생활비* 12개월	
	자 산	금 용	저축·투자	은행예금, 주식/채권/신탁, 저축성 보험, 계, 빌려준 돈
			임대 보증금	거주 보증금, 거주외 건물, 토지 및 임야 임대보증금
		부 동 산	거주 부동산	거주부동산 시가
거주외 부동산			거주외 건물, 토지, 임야 시가	

<표 1>계속

	부채	금융부채	금융기관 및 비금융기관 부채, 개인적으로 빌린 돈, 미리타고 부을 계
		부동산부채	전세금, 임대보증금 받은 것
순자산		총자산-총부채	

IV. 연구결과 및 분석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전체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으로 성별, 교육수준, 은퇴시기, 은퇴연령, 배우자의 유무, 평균 가구원수, 거주형태에 대해 살펴본 결과는 <표 2>에 제시된 것과 같다.

조사대상자의 성별은 전체 조사대상자 288명 중 남성이 143명으로 전체의 49.7%였고, 여성은 145명, 50.3%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은 중졸이하가 71.2%, 고졸이 16.3%, 대졸이상인 12.5%로 교육수준은 비교적 낮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은퇴시기는 2002년 은퇴자가 30.9%로 가장 많았고 2001년이 24.7%, 2000년이 22.6%, 1999년 은퇴자가 21.9%로 나타났으며, 은퇴시점의 평균 연령은 60.52세 이다. 은퇴시점에 배우자가 있는 응답자는 전체의 74.7%, 배우자가 없는 응답자는 25.3%로 은퇴시점에 배우자가 있는 응답자의 비중이 더 높았다. 한편, 은퇴 5년후의 배우자의 유무는 배우자가 있는 응답자의 비중이 배우자가 없는 응답자 보다 여전히 높지만 66.7%로 감소하였고, 배우자가 없는 응답자는 33.3%로 증가하였다. 은퇴 5년후의 평균 가구원수는 2.7명으로 은퇴시점 평균 가구원 수 3.2명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은퇴시점의 거주형태를 살펴본 결과, 은퇴시점의 자가거주는 73.0%, 은퇴 5년후의 자가거주는 72.7%로 자가거주가 감소하긴 하였지만, 큰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전세는 은퇴시점에는 17.6%에서 은퇴 5년후 14.2%로 감소하였고, 월세거주자는 4.3%에서 8.0%로 증가 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288)

변수		구분	빈도(%) 또는 평균(표준편차)		
인 구 사 회 학 적	성별	남	143 (49.7)		
		여	145 (50.3)		
	교육수준	중졸이하	205 (71.2)		
		고졸	47 (16.3)		
		대졸이상	36 (12.5)		
	은퇴시기	1999년	63 (21.9)		
		2000년	65 (22.6)		
		2001년	71 (24.7)		
		2002년	89 (30.9)		
	은퇴연령	평균(세)	60.52 (7.66)		
은퇴 후 변화		은퇴시점	은퇴 5년후		
특 성	배우자유무	무	73 (25.3)		
		유	215 (74.7)		
	가구원수		3.2 (1.52)	2.7 (1.35)	
	거주형태	자가	170 (73.0)		194 (72.7)
전세		41 (17.6)		38 (14.2)	
월세		10 (4.3)		23 (8.0)	
기타		12 (5.2)		12 (4.5)	

* 결측치(missing value)로 인하여 각 셀(cell)의 빈도합이 다를 수 있음.

조사대상자의 주된 일자리 특성에 관해 살펴 본 결과는 <표 3>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다. 주된 일자리 특성으로는 가장 오랫동안 일한 주된 일자리의 산업, 직업, 종사상 지위, 근속년수, 은퇴당시 월평균 임금을 살펴보았다.

<표 3> 조사대상자의 주된 일자리 특성

(n=288)

변수	구분	빈도(%) 또는 평균(표준편차)	
일 자 리 특 성	산업	농어업	65 (23.5)
		제조업	55 (19.9)
		전기가스·수도업·건설업	21 (7.6)
		도소매업	26 (9.4)
		숙박·운수·통신업	38 (13.7)
		서비스업 (금융·임대·오락·가사)	72 (26.0)
	직업	전문·관리직	42 (15.1)
		사무·판매·서비스직	80 (28.8)
		농어업직	53 (19.1)
		기능·기술직	64 (23.0)
단순노무직		39 (14.0)	
종사상 지위	임금근로자	162 (57.3)	
	자영업자	83 (29.6)	
	무급가족봉사자	36 (12.8)	
고용 형태	정규직	113 (69.8)	
	비정규직	49 (30.2)	
주된 일자리 근속년수(년)		19.85 (15.89)	
월평균 근로소득(만원)		102.21 (163.55)	

* 결측치(missing value)로 인하여 각 셀(cell)의 빈도합이 다를 수 있음.

먼저 주된 일자리의 산업은 서비스업이 2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고, 다음으로 농어업(23.5%), 제조업(19.9%), 숙박·운수·통신업(13.7%), 도소매업(9.4%), 전기가스·수도업·건설업(7.6%)순으로 분포하고 있었다. 주된일자리 직종은 사무·판매·서비스직이 28.8%로 가장 많았고, 기능·기술직(23%), 농어업직(19.1%), 전문·관리직(15.1%), 단순노무직(14%)의 순으로 나타났다. 종사상 지위로는 임금

근로자가 57.3%로 가장 많았고, 자영업자가 29.6%, 무급가족봉사자가 12.8%로 조사되었다.

조사대상자의 주된 일자리 월평균 임금은 약 102만원으로 조사되었다. 평균 일자리 근속년수는 19.8년으로 이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2006)의 주된일자리 평균근속기간(20년 9개월)보다 본 연구의 평균근속기간이 조금 짧은 것으로 드러났다.

2. 은퇴시점과 은퇴 5년후의 소득과 자산액 비교

조사대상자의 은퇴시기가 1999년부터 2002년 사이에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4년간의 물가상승률을 조정하여 소득, 자산액을 측정하였다. 즉 은퇴시점의 자료는 2000년의 소비자물가지수(Consumer Price Index)를 기준으로 환산하였고, 은퇴 5년후 자료는 2005년의 소비자물가지수 기준으로 자료를 조정하였다.

전체조사대상자의 은퇴시점과 은퇴 5년후의 소득과 자산액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개인근로소득, 타(他)가구원의 근로소득, 자산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 기타소득, 생활비, 거주부동산시가, 순자산이 두 시점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그러나 유형별 소득 및 자산액 보유자만을 대상으로 은퇴시점과 은퇴 5년후의 소득과 자산액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타가구원의 근로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 기타소득, 생활비, 거주부동산 시가, 순자산에서 시점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전체 조사대상자와 보유자의 은퇴시점과 은퇴 5년후 소득과 자산액의 변화는 <표 4>, <표 5>와 같다.

전체 조사대상자의 은퇴시점과 은퇴 5년후 두 집단 간의 연평균

근로소득액을 살펴본 결과, 은퇴시점의 개인근로소득액은 약 1,199만원으로 조사되어, 은퇴 5년후 개인근로소득액(약 158만원)에 비해 유의하게 많았다. 이는 은퇴로 인한 소득원의 상실로 근로소득의 감소가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통계청(2000)의 도시근로자 가구의 가계수지 동향의 가구주의 근로소득은 약 1,639만원, 배우자를 제외한 기타가구원의 근로소득은 약 167만원으로 조사된 것과 비교해 보면 본 연구 결과와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근로소득을 보유한 가계(85%)만을 대상으로 살펴보면, 개인근로소득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은퇴 5년후의 전체 조사대상가계와 보유가계(14%)간의 평균 개인근로소득은 각각 약 158만원과 약 1,158만원으로 조사되었다.

전체 조사대상의 타가구원 근로소득액은 은퇴시점에(약 604만원)에 비해 은퇴 5년후(약 1,089만원)에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유가계의 평균 타가구원 근로소득액을 살펴본 결과 역시 은퇴시점보다 은퇴 5년후에 유의하게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은퇴시점에 타가구원 근로소득을 보유한 가계는 53%로 조사되었고 평균 타가구원 근로소득액은 약 1,148 이었던 것에 비하여 은퇴 5년후 타가구원의 근로소득을 보유한 가계는 49%로 조사되었으나 평균 타가구원의 근로소득액은 2,231만원으로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조사대상가계를 대상으로 은퇴시점과 은퇴 5년후의 자산소득 비교 결과, 은퇴시점 자산소득(약 182만원)이 은퇴 5년후의 자산소득(약 647만원)보다 유의하게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보유가계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는, 보유율만을 가지고 비교했을때는 은퇴시점에 18%의 보유가계가 45%보유가계로 증가하였으나 은퇴5년후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은퇴 노인가계와 취업노인 가계의 원천별 소득을 분석한 김연정(1998)의 연구에서 근로소득의 경우 은퇴 노인가계가 취업 노인가계의 근로소득보다 적고 자산소득, 기타소득 및 이전소득이 유의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은퇴시점과 은퇴 5년후를 비교한 것이기 때문에 취업과 비취업 은퇴가계로 나누어 분석한 것은 아니지만, 은퇴 시점에 비해 은퇴 5년후 가계의 근로소득이 감소하고 자산소득과 이전소득이 증가하는 것은 취업 노인가계와 은퇴 노인가계의 소득과 유사한 패턴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취업노인가계보다 은퇴노인가계가 금융자산과 실물자산을 많이 보유하였다는 그의 연구결과는, 본 연구에서 금융자산과 부동산 자산의 합으로 구성된 자산소득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많은 것과는 일맥상통 한다고 할 수 있다. 반면 기타소득의 경우 전체 조사대상 가계 및 보유가계 모두 김연정(1998)의 연구결과와는 반대로 은퇴시점이 은퇴 5년후 보다 유의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은퇴시점에 수령한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이나 보험소득 등이 기타소득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선행연구(심영, 2000; 통계청, 2004)에서 대다수의 은퇴가계가 자녀나 친지로부터의 이전소득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도 은퇴 5년후의 사적, 공적 이전소득이 은퇴시점보다 유의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나 선행연구와 일치함을 알 수 있다. 은퇴시점과 은퇴 5년후의 보유율면에서도 공적이전소득은 은퇴5년후에 66%의 가계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적이전소득은 은퇴시점에 23%의 가계만이 보유했던 것에 비해 은퇴 5년후 52%의 가계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비의 경우 본 연구에서는 은퇴시점보다 은퇴 5년 후 생활비가 증가하여 두 시점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An(2003)과 안종범과 전승훈(2003, 2004)이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동일 가계의 은퇴 전·후의 소비를 비교한 연구에서는 소비지출에 있어 차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하지 않았다. 그러나 방하남 외(2009)에서는 가구주 및 가구특성을 통제 하여 소비를 추정 했을 때, 은퇴시점에는 은퇴에 대한 노후대비를 하느라고 소비를 줄이는 경향이 있고 은퇴이후 오히려 소비가 증가한다고 보고된 바 있다.

<표 4> 은퇴시점과 은퇴 5년후 전체대상가계의 소득과 자산액 비교

(n=288)

변수	구분	은퇴시점(S.D)	은퇴 5년후(S.D)	t/ x ²		
경제적 특성	소득	근로소득	개인 1199.15 (1896.65) 타(他)가구원 604.48 (994.76)	158.18 (586.99) 1089.01 (1697.32)	8.77*** -3.93***	
		자산소득	182.25 (809.18)	647.22 (2601.49)	-2.80**	
		이전소득	공적	45.37 (188.89)	255.34 (591.69)	-5.47***
			사적	54.50 (163.37)	211.32 (384.07)	-6.14***
		기타소득	316.99 (2065.83)	45.05 (198.48)	2.14*	
		총소득	2283.09 (3072.23)	2186.07 (3266.84)	-3.83***	
		지출	생활비	1119.36 (823.77)	1440.32 (1094.58)	-3.79***
	자산	금융	저축·투자	2350.13 (4095.08)	2670.89 (5379.74)	-0.77
			임대보증금	558.23 (1483.77)	853.92 (2563.59)	-1.63
		부동산	거주부동산 시가	5995.60 (8176.08)	9121.27 (16057.78)	-2.71**
			거주외부동산	1528.47 (8840.45)	3757.91 (18910.63)	-1.70
		부채	금융	1011.70 (3032.46)	1618.94 (7071.97)	-1.28
	부채	부동산	1039.67 (3979.60)	2033.11 (10520.73)	-1.39	
		순자산 (자산-부채)	6770.34 (11182.51)	12555.82 (30940.05)	-3.77***	

* *P<0.05, **P<0.01, ***P<0.001

* 결측치(missing value)로 인하여 각 셀(cell)의 빈도합이 다를 수 있음.

* 은퇴시점CPI 2000년=100, 은퇴 5년후CPI 2005년=100

<표 5> 은퇴시점과 은퇴 5년후 보유가계의 소득과 자산액 비교

(n=288)

변수	구분	보유율 %	은퇴시점(S.D)	보유율 %	은퇴 5년후(S.D)	t/ x ²		
경제적 특성	소득	근로소득	86	1386.67 (1975.11)	14	1158.59 (1180.23)	0.68	
		타(他)가구원	53	1148.09 (1121.27)	49	2231.15 (1832.47)	-5.68***	
		자산소득	18	1000.52 (1679.31)	45	1432.37 (3729.84)	0.05	
		이전소득	공적	26	176.81 (342.05)	66	386.71 (692.93)	-3.13**
			사적	23	240.37 (271.65)	52	403.02 (452.19)	-3.14**
		기타소득	7	4263.55 (6518.01)	7	668.32 (418.82)	2.46*	
		총소득	95	2391.02 (3102.80)	92	2376.53 (3339.34)	0.05	
	지출	생활비	99	1127.74 (821.10)	100	1445.73 (1093.05)	-3.79***	
	자산	금융	저축·투자	69	3387.69 (4547.44)	73	3675.91 (6014.56)	-0.52
			임대보증금	24	2337.60 (2259.43)	28	3039.98 (4109.53)	-1.27
		부동산	거주부동산	67	8908.95 (8568.68)	71	12759.81 (17736.81)	-2.57*
			거주外부동산	9	16652.30 (25071.65)	13	27871.18 (45017.60)	-1.00
		부채	금융	35	2914.15 (4590.53)	36	5047.28 (11818.36)	-1.60
	부동산		14	7530.64 (8198.81)	16	12772.13 (23873.63)	-1.26	
	순자산 (자산-부채)	93	7314.14 (11451.62)	97	12993.81 (31386.25)	-2.72**		

* *P<0.05, **P<0.01, ***P<0.001

* 결측치(missing value)로 인하여 각 셀(cell)의 빈도합이 다를 수 있음.

* 은퇴시점CPI 2000년=100, 은퇴 5년후CPI 2005년=100

3. 은퇴시점과 은퇴 5년후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실질소득과 실질자산액 비교

은퇴시점과 은퇴 5년후의 소득과 자산액의 변화를 보다 정확하게 살펴보기 위하여 두 시점간의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차이를 비교하였다. 2005년 기준으로 조정된 자료를 2000년 기준으로 환산하였을 때, 은퇴시점과 은퇴 5년후 두시점 간의 물가상승비 차이는 약 17.7%이다. 은퇴시점의 소비자물가지수와 은퇴 5년후의 소비자 물가지수를 모두 2000년을 기준으로 환산하여 조사된 소득·자산 평균액과 두시점 간의 변화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6>, <표 7>에 제시되어 있다.

<표 6>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전체조사대상 가계를 대상으로 실질소득액과 실질자산액의 두 시점 간의 비교결과이다. 전체조사대상 가계의 두 시점간 비교결과 개인근로소득, 자산소득, 공·사적이전소득, 기타소득, 순자산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보유가계의 실질소득과 실질자산액 비교결과는 <표 7>로 개인근로소득과 자산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 기타소득 그리고 순자산이 두시점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개인근로소득의 경우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였을 때 전체가계를 대상으로 비교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보유가계만을 대상으로 하였을 때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한편,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지 않고 전체가계를 대상으로 한 <표 4>와 비교하여 보면, 타가구원의 근로소득과 거주부동산의 시가의 경우 은퇴 5년후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물가상승률이 고려되면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지 않은 보유가계를 대상으로 두 시점간 소득과 자산 차이를 비교한 <표 5>와 물가상승률이 반영된 <표 7>를 비교한 결과,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었을 때 사적이전소득, 거주부동산시가 그리고 생활비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또, 물가상승률이 고려되었을 경우에는 고려하지 않았을 때 보다 은퇴시점과 은퇴 5년후의 차이의 폭이 적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은퇴 5년후에 개인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은 유의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자산소득, 공·사적이전소득, 순자산의 경우는 전체가계와 보유가계 모두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어도 은퇴 5년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실질 소득에서도 역시 연금 등 공적이전소득에 의존하는 가계보다 사적이전소득에 의존하는 가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물가상승을 고려하지 않은 <표 4>와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표 6>의 결과를 비교해 보면 타가구원 근로소득과, 생활비, 거주부동산 시가가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물가상승으로 인한 화폐의 가치 하락, 부동산 시장의 과열 등의 경제상황을 고려하여야 하는 이유이다. 두 시점간의 5년 동안 물가상승률 17.7%으로 인해 산술적 통계의 오류를 범할수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금융자산의 경우, 두 시점 간의 유의한 차이가 없고, 은퇴 5년후 금융자산이 은퇴시점에 비해 많이 감소하지도 않았다. 금융부채와 부동산 부채 모두 유의한 차이는 없으나 모두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보증금 자산과 거주부동산의 시가와 거주외부동산의 시가가 은퇴 5년후에 증가하여서 순자산이 유의한 증가를 보인 것으로 예측이 된다.

**<표 6> 은퇴시점과 은퇴 5년후 전체조사대상자의 실질소득과
실질 자산액 비교 (물가상승률 반영)**

(n=288)

변수	구분	은퇴시점(S.D)	은퇴 5년후(S.D)	t/ x ²		
경제적 특성	근로소득	개인	1199.15 (1896.65)	134.39 (498.72)	9.09***	
		타(他)가구원	604.48 (994.76)	925.24 (1442.07)	-2.92	
	자산소득		182.25 (809.18)	549.88 (2210.27)	-2.56*	
	소득	이전소득	공적	45.37 (188.89)	216.94 (502.71)	-5.17***
			사적	54.50 (163.37)	179.54 (326.31)	-5.60***
		기타소득	316.99 (2065.83)	38.28 (168.63)	2.20*	
	총소득		2283.09 (3072.23)	1857.33 (2775.56)	1.74	
	지출	생활비	1119.36 (823.77)	1223.72 (929.97)	-1.37	
	자산	금융	저축·투자	2350.13 (4095.08)	2269.23 (4570.72)	0.21
			임대보증금	558.23 (1483.77)	725.51 (2178.07)	-1.03
		부동산	거주부동산 시가	5995.60 (8176.08)	7749.59 (13642.98)	-1.71
			거주외부동산	1528.47 (8840.45)	3192.78 (16066.81)	-1.43
		부채	금융	1011.70 (3032.46)	1375.48 (6008.47)	-0.88
부동산			1039.67 (3979.60)	1727.37 (8938.60)	-1.10	
순자산 (자산-부채)		6770.34 (11182.52)	10667.64 (26287.21)	-2.23*		

* *P<0.05, **P<0.01, ***P<0.001

* 결측치(missing value)로 인하여 각 셀(cell)의 빈도합이 다를 수 있음.

* 은퇴시점 CPI 2000년=100, 은퇴 5년후 CPI 2000년=100

<표 7> 은퇴시점과 은퇴 5년후 보유가계의 실질소득과 실질자산액 비교 (불가상승률 반영)

(n=288)

변수	구분	은퇴시점(S.D)	은퇴 5년후(S.D)	t/ x ²		
경제적 특성	근로소득	개인	1386.67 (1975.11)	984.36 (1002.74)	1.21	
		타(他)가구원	1148.09 (1121.27)	1895.62 (1556.90)	-4.40***	
		자산소득	1000.52 (1679.31)	1216.96 (3168.94)	-0.45	
	이전소득	공적	176.81 (342.05)	328.55 (588.73)	-2.48*	
		사적	240.37 (271.65)	342.41 (384.18)	-1.87	
		기타소득	4263.55 (6518.01)	567.81 (355.83)	2.53*	
		총소득	2391.02 (3102.80)	2019.14 (2837.16)	1.45	
	지출	생활비	1127.74 (821.10)	1228.32 (928.68)	-1.32	
	자산	금융	저축·투자	3387.69 (4547.44)	3123.12 (5110.08)	0.53
			임대보증금	2337.60 (2259.43)	2582.82 (3491.53)	-0.48
		부동산	거주부동산	8908.95 (8568.68)	10840.96 (15069.51)	-1.45
			거주外부동산	16652.30 (25071.65)	23679.85 (38247.75)	-0.72
		부채	금융	2914.15 (4590.53)	4288.26 (10041.08)	-1.18
		부동산	7530.64 (8198.81)	10851.43 (20283.45)	-0.92	
	순자산 (자산-부채)	7314.14 (11451.62)	11039.77 (26666.32)	-2.05*		

* *P<0.05, **P<0.01, ***P<0.001

* 결측치(missing value)로 인하여 각 셀(cell)의 빈도합이 다를 수 있음.

* 은퇴시점 CPI 2000년=100, 은퇴 5년후 CPI 2000년=100

4. 은퇴시점과 은퇴 5년후의 소득과 자산 구성비 비교

은퇴시점과 은퇴 5년후의 소득구성과 자산구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독립표본 t-test를 실시하였다.

<표 8>은 은퇴시점과 은퇴 5년후의 소득구성과 자산구성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이다. 소득구성의 비교 결과, 은퇴시점보다 은퇴 5년후 개인근로소득비중이 현저하게 줄었고, 그 외의 모든 유형별 소득비중이 증가하였다. 특히 자산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이 전체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은퇴시점에 비해 은퇴 5년후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근로소득의 경우 은퇴시점 보다 은퇴 5년후의 비중이 감소하였다. 은퇴로 인한 소득에서 개인 근로소득 비중이 은퇴시점과 은퇴 5년후를 비교하였을 때, 확연하게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사적이전소득과 자산소득, 공적이전소득은 은퇴 5년후 연간 총소득에서 차지비율이 높아져 은퇴 5년후보다 은퇴시점의 구성비가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퇴시점의 개인근로소득의 경우 총 연간소득의 56.38%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은퇴 5년후에는 개인근로소득이 급격히 줄어 5.83%를 차지하고 있다. 타가구원의 근로소득은 은퇴시점에 27.66%의 비율이었으나, 은퇴 5년후에는 30.1%로 증가하였다. 또한 은퇴 5년후에 타가구원의 소득비율이 가장 크게 차지하고 다음으로 사적자산소득(23.3%)과 자산소득(14.56%), 공적이전소득(13.59%), 기타소득(12.62%)순서의 비율을 보였다. 은퇴시점이 개인과 타가구원의 근로소득 대부분의 소득에 치우쳐 있던 것과는 다르게 타가구원소득과 사적이전소득 비율 증가로 우리나라 은퇴가계가 가족과 친지에 의해 노후생활을 의존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특

히 사회보장 소득인 공적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 13%밖에 되지 않는 것은 공적연금제도 확충 필요성과 공적이전소득만 가지고 노후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움을 의미하기도 한다(김연정, 1998). 이것은 독일경제학 패널을 이용하여 연금자산이 가계저축에 미치는 대체 효과를 분석한 김상호(2005)의 연구결과인 17%정도와 비슷하다 할 수 있다. 소득구성에서 각 유형별 소득구성비는 <그림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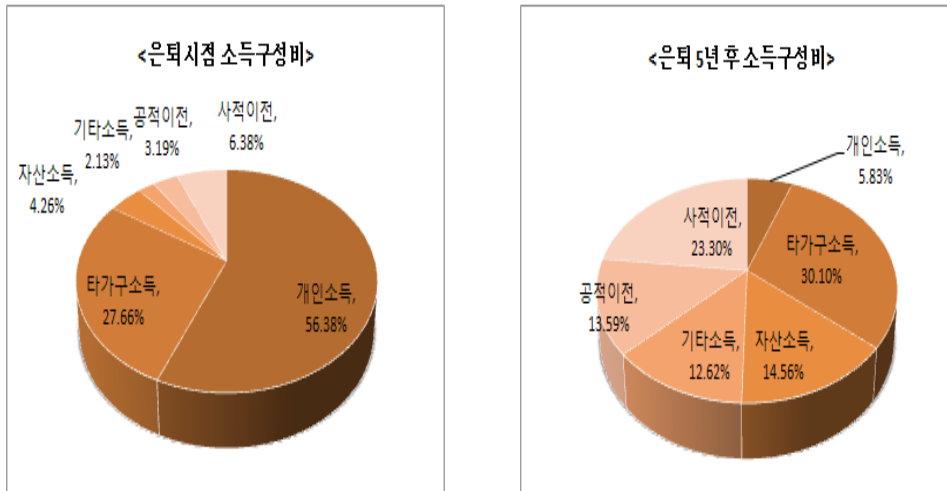
은퇴시점 소득구성을 살펴보면 개인근로소득이 가계소득의 56.38%를 차지하고, 본인을 제외한 타가구원의 근로소득(27.66%), 사적이전소득(6.38%), 자산소득(4.26%), 공적이전소득(3.19%), 기타소득(2.13%)의 순서로 구성되어있었다. 김영숙(2002)의 연구에서 일반가계와 일반노인가계의 경제적 생활수준을 비교한 결과, 일반가계의 경우 소득의 80%이상이 근로소득이었고 자산소득(2.11%), 사적소득(1.92%), 공적소득(0.68%)으로 조사된 것과는 다소 상이하다.

반면 은퇴 5년후의 소득구성은 타가구원의 근로소득(30.10%), 사적이전소득(23.30%), 자산소득(12.56%), 공적이전소득(13.59%), 기타소득(12.62%), 개인근로소득(5.83%)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와는 다소 상이한 것으로, 단독노인가구의 소득 구성비를 살펴본 심영(1999)은 단독노인가계의 소득 구성비 근로소득(35.4%), 자산소득(21.1%), 사적이전소득(21.1%), 공적이전소득(13.05%) 순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밝혔고, 김영숙(2002)은 일반노인가계의 소득원천별 구성의 근로소득이 65.42%, 공적이전소득(13.39%)이 사적이전소득(6.23%)보다 높았고 자산소득(3.96%)로 가장 적은 비율로 구성되어 있음을 밝혔다. 기타소득이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은퇴시점에 비해 은퇴 5년 후 비중이 증가한 것은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항목별 비중을 조정하였기 때문이다.

은퇴시점과 은퇴 5년간의 자산의 구성비를 살펴본 결과, 거주부동산의 시가와 거주외부동산의 시가가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은퇴시점에는 각 52.2%와 4.3%로 자산에서 56.5%를 차지하고 있었고, 은퇴 5년후에는 각 57.7%와 6.2%로 비율의 합이 63.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자산의 경우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은퇴시점보다 은퇴 5년후 유의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부동산시가의 비율의 경우 은퇴시점보다 은퇴 5년후에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약 8%정도 증가하였다. 은퇴시점에 거주부동산시가의 차지비율이 은퇴 5년후 보다 유의하게 적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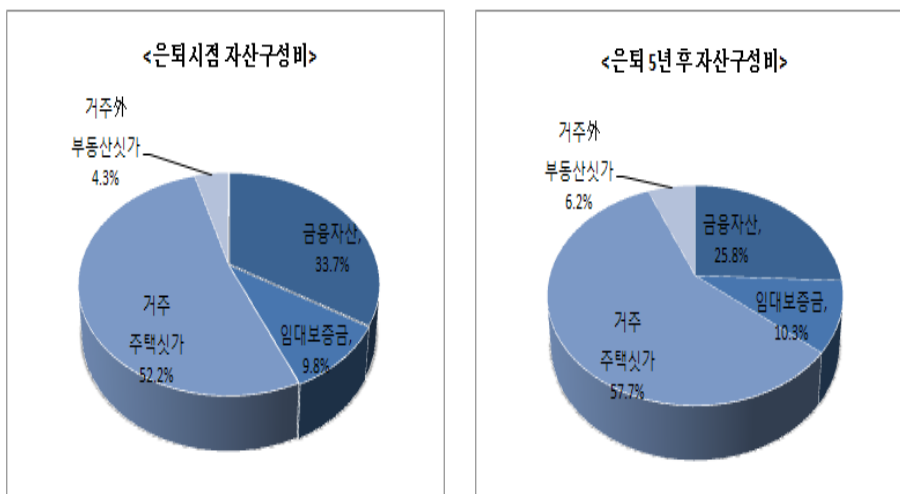
통계청(2006)의 가계자산조사에서 부동산(주택, 토지, 건물 등)이 차지하는 비율은 76.8%였고 반면, 금융자산(저축액+전월세보증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20.4%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통계청(2006)의 조사에서처럼 기타자산(자동차, 회원권)을 포함시키지 않았고, 조사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비율상의 차이가 있다. 그러나 부동산 자산이 가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은퇴시점과 은퇴 5년후 모두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우리나라 가계의 자산구성이 부동산에 치우쳐져 있음을 지적한 것과 일치한다(Yhu외, 1996; 이철용, 2006; 여윤경, 2006). 은퇴시점과 은퇴 5년후 총자산을 구성하고 있는 자산구성의 결과는 <그림 2>와 같다. 은퇴시점과 은퇴 5년후 시점의 총자산을 구성하고 있는 자산구성비율을 살펴보면, 은퇴시점의 경우 거주부동산의 시가가 자산의 52.2%를 차지하고 있고 거주외부동산의 시가(4.3%), 금융자산(33.7%), 임대보증금 자산이 9.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 은퇴시점과 은퇴 5년후의 유형별 소득비율



* 결측치(missing value)로 인하여 100을 기준으로 각 항목별 비율을 조정하였음.

<그림 2> 은퇴시점과 은퇴 5년후의 자산보유 비율



* 결측치(missing value)로 인하여 100을 기준으로 각 항목별 비율을 조정하였음.

<표 8> 은퇴시점과 은퇴 5년후의 소득과 자산의 구성비

(n=288)

변수		은퇴시점(S.D)		은퇴 5년후(S.D)		t/ x ²
소득 구 성 비 율	개인근로소득 /연소득	0.56	(0.36)	0.05	(0.20)	19.05***
	타가구원근로소득 /연소득	0.27	(0.33)	0.30	(0.42)	-1.55
	자산소득 /연소득	0.04	(0.13)	0.14	(0.25)	-6.51***
	기타소득 /연소득	0.02	(0.12)	0.12	(0.05)	1.65
	공적이전 /연소득	0.03	(0.13)	0.13	(0.25)	-6.15***
	사적이전 /연소득	0.06	(0.17)	0.23	(0.37)	-7.19***
자 산 구 성 비 율	금융자산 /총자산	0.39	(0.34)	0.25	(0.29)	2.21*
	임대보증자산 /총자산	0.09	(0.18)	0.10	(0.18)	-0.44
	거주부동산시가 /총자산	0.52	(0.43)	0.57	(0.42)	-1.96*
	거주외부동산시가 /총자산	0.04	(0.16)	0.06	(0.17)	-1.07

* *P<0.05, **P<0.01, ***P<0.001

* 결측치(missing value)로 인하여 각 셀(cell)의 항목별 비중의 합이 다를 수 있음.

은퇴 5년후에는 금융자산은 은퇴시점에 비해 줄어들어 총자산의 25.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자산인 거주부동산시가(57.7%)은 거주외부동산 시가와 임대보증금 역시 모두 자산의 비율이 증가하였다. 선행연구결과(유우정, 2005; 문숙재 외, 1992; 남상호 외, 2008) 은퇴시점과 은퇴 5년후 모두 실물자산인 부동산자산의 비율이 높다는 것과 본 연구역시 일치한다고 하겠다.

그러나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부동산가격 상승 등의 경제상황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산구성비 변화가 단순한 가격상승으

로 인한 구성비의 증감이 아닌지에 대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5.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은퇴시점과 은퇴 5년후 소득, 자산 변화분 비교

<표 9> <표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구학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은퇴시점과 은퇴 5년후 소득과 자산 변화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독립표본 t-test를 실시하였다.

소득변화분 분석결과는 <표 9>, 자산변화분 분석결과는 <표 10>과 같다.

성별에 따라 개인근로소득 변화분, 공적이전소득 변화분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개인근로소득 변화분의 경우 여성(약 518만원)에 비해 남성이 평균 약 1,713만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것은 여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적게 감소하는 것으로 김지경(2005)의 연구에서와 같이 여성의 사회적으로 낮은 지위나 교육수준으로 인해 은퇴시점과 은퇴 5년후 개인근로소득 변화에 있어 적은차이를 보이는 원인이라 사료된다. 또한 공적이전 소득 역시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비롯된 임금과 근속기간사이에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 바(Abbot, 1977) 이는 여성과 남성에 있어 은퇴시점과 은퇴 후 연금 및 사회보장보험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교육수준의 경우 개인근로소득 변화분과 연간가계소득 변화분, 기타소득변화분, 공적이전소득 변화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근로소득의 경우, 은퇴시점과 은퇴 5년후의 평균 변화분은 약 1,075만원으로 대졸이상의 응답자가 다른 집단에 비해 은퇴 5년후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많은 선행연구(Leno, 1985; Maxwell, 1986; 성영

에, 1994; 문숙재 외, 1996) 에서 교육수준과 소득사이의 정적인 상관 관계를 밝혔고, 은퇴시점과 은퇴 5년후 변화분이 큰 것은 높은 교육 수준의 응답자들이 은퇴이후 근로소득 단절되는 것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기타소득변화분, 연간가계소득 변화분 역시 대졸이상의 응답자가 다른 집단에 비해 가장 크게 감소하였는데, 기타소득 변화분에 있어 은퇴시 받게 되는 퇴직금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기 때문이다. 이 역시 교육수준이 높을 수록 주된일자리의 고용안전성으로 인한 근속연수의 증가와 높은 소득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공적이전소득 변화역시 위에서 언급한 성별에 의한 원인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은퇴 후 배우자의 유무에 따라 소득의 변화를 비교한 결과 개인근로소득, 자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변화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근로소득의 경우 배우자가 있는 응답자는 은퇴시점보다 평균 1,296만원 감소한 것에 비해 배우자 없는 응답자는 평균 약 547만원 감소하여 배우자가 있는 응답자가 더 많은 개인근로소득 감소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소득과 공적이전소득 변화분은 유배우 응답자가 무배우자 응답자보다 은퇴시점과 은퇴 5년후간의 변화분에서 더 큰 차이를 보였다. 특히 자산소득은 배우자가 있는 은퇴한 가계가 평균 약676만원 증가하며, 배우자가 없는 가계(약 83만원)보다 8배 정도 더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심영(2000)의 연구에서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계가 없는 가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제복지 수준이 높다고 밝힌 연구 결과를 지지한다.

은퇴 5년후의 자가 보유에 따라 자산소득 변화액, 공적이전소득 변화액 변화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퇴시점에는 대부분의 가계가 자산이 개인근로소득의 경우 은퇴시점에 자가를 보유하고 있는 응답자는 은퇴 5년후와 비교하여 약 1,268만원 정도의 소득 차이가 났으며, 자가를 보유하지 않은 응답자 보다 개인 근로소득 변화액이 유의하게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가 보유자가 미보유자보다 개인근로소득 측면에서 은퇴 시점에 비하여 은퇴 5년후가 확연히 감소하였고 그 변화 폭도 큰 것을 의미한다. 나머지 자산소득 변화액과 공적이전소득 변화분 모두 자가를 보유한 응답자가 미보유자 보다 유의하게 많이 변화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은퇴시점에 비자가 응답자가 자가 보유자에 비해 개인 근로소득이 유의하게 적었다. 연간 가계소득 변화액과 기타소득 변화액, 임대보증금 자산변화액은 자가보유자가 비자가 응답집단 보다 유의하게 더 많이 변화했다. 이는 비자가 보유자가 임대보증금으로 가지고 있는 자산이기 때문에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은퇴 5년후에는 자가보유 여부에 따라 자가보유자 자산소득이 비자가 응답집단보다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또한 자가를 보유한 응답자가 공적이전소득 변화액 더 많이 증가하였다. 또한 거주 및 거주외 임대보증금 변화액은 비자가 응답자가 더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된 일자리 특성의 직업종류에 따른 변화분 차이는 개인근로소득의 경우 농어업직 종사자가 전문관리 직종에 비해 개인근로소득의 감소폭이 작았다. 전문·관리직종의 종사자는 자산소득 변화액과 공적이전소득 변화액이 다른 직종에 비해서 변화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과 자산의 변화는 주된 일자리 특성과 고용상태 등과 관련이 깊다. 정규직 응답자가 비정규직 응답자보다 개인근로소득과 기타소득 변화분이 은퇴시점에 비해 은퇴 5년후가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 응답자가 개인근로소득 변화분이 비정규직 응답자에

비해 감소폭이 크게 나타난것은 은퇴로 인한 안정적인 소득상실을 의미하는 것이고. 기타소득 변화분이 은퇴시점에 비해 감소폭이 큰것은 퇴직금 등을 원인으로 들 수 있다. 반면, 공적이전소득 변화분이 비정규직 응답자에 비해 유의하게 많은 원인을 높은 고용안정성을 들 수 있다. 이는 차경욱 외 (2007)의 연구에서 직업의 안정성이 근로소득액 수준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퇴직연금 수령에도 연관이 있다고 밝힌 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다.

<표 9>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소득 변화분 비교

(n=288)

변수	△ 연간 가계총소득		△ 개인 근로소득		△ 타가구원 근로소득		△ 자산소득	
	평균(S.D)	D	평균(S.D)	D	평균(S.D)	D	평균(S.D)	D
성별	남	-379.97 (4613.43)		-1713.51 (2609.68)		412.30 (1411.35)		728.75 (3555.56)
	여	178.42 (2148.50)		-518.29 (647.35)		551.87 (1716.74)		179.91 (1039.86)
	t/ x ²	-1.31		-4.94***		-0.69		1.75
교육수준	중졸 이하	231.22 (3096.86)	a	-721.77 (1782.60)	a	553.32 (1535.28)		308.19 (2491.72)
	고졸	-330.00 (3466.24)	a	-1214.12 (1325.79)	a	507.48 (1518.28)		366.22 (726.90)
	대졸 이상	-1675.08 (5583.16)	b	-2842.97 (2387.35)	b	86.29 (1793.30)		1460.74 (4563.01)
	F	4.51*		19.95***		1.23		2.79
배우자유무	무	-229.32 (2060.55)		-547.75 (640.98)		321.81 (1295.79)		83.51 (328.53)
	유	-36.71 (4150.52)		-1296.32 (2231.17)		554.58 (1677.95)		676.74 (3309.42)
	t/ x ²	-0.52		4.18***		-1.182		-2.34*
자가보유여부	자가	-203.16 (4420.79)		-1268.19 (2302.25)		425.17 (1592.11)		639.67 (3338.63)
	비자가	-77.12 (1845.86)		-733.90 (1035.90)		373.12 (1416.46)		120.88 (361.97)
	t/ x ²	-0.22		-2.36*		0.22		-1.99*
직업	전문· 관리직	-830.63 (4688.71)		-2359.81 (2385.61)	c	446.97 (1847.27)		1201.68 (4325.62)
	사무·판매 서비스직	65.35 (2892.94)		-1159.52 (2761.98)	b	553.78 (1595.41)		379.90 (1056.84)
	농어업직	235.35 (1369.28)		-342.99 (599.50)	a	461.48 (1416.20)		111.65 (385.66)
	기능· 기술직	-636.30 (2925.15)		-1119.47 (909.37)	ab	594.02 (1543.40)		197.38 (613.94)
	단순노무직	122.53 (1457.18)		-461.41 (427.12)	ab	345.34 (1465.58)		-1.39 (1245.99)
	F	1.4		7.748***		0.17		2.67*
고용형태	정규	-498.10 (5037.34)		-1770.91 (2658.49)		393.26 (1740.33)		911.61 (4129.97)
	비정규	356.03 (1291.06)		-542.64 (522.68)		479.77 (1358.40)		201.84 (570.74)
	t/ x ²	-1.67		-4.58***		-3.01		1.74*

* *P<0.05, **P<0.01, ***P<0.001

<표 9계속>

(n=288)

변수		Δ 기타소득		Δ 공적 이전소득		Δ 사적 이전소득	
		평균(S.D)	D	평균(S.D)	D	평균(S.D)	D
성별	남	-344.51 (2394.78)		310.48 (672.40)		148.63 (409.92)	
	여	-201.22 (1717.57)		122.91 (464.93)		157.93 (351.38)	
	t/ x ²	-0.55		2.62**		-0.19	
교육수준	중졸 이하	-19.60 (635.50)	a	95.12 (262.05)	c	156.09 (379.13)	
	고졸	-460.25 (2491.87)	a	329.11 (678.50)	b	148.82 (427.65)	
	대졸 이상	-1397.21 (4869.04)	b	806.04 (1180.74)	a	142.44 (348.42)	
	F	6.84***		24.18***		0.02	
배우 자유 무	무	-127.73 (1351.36)		106.17 (242.15)		118.91 (263.10)	
	유	-356.75 (2406.58)		285.70 (703.71)		171.51 (433.22)	
	t/ x ²	0.84		-2.98**		-1.22	
자가 보 유 여 부	자가	-429.05 (2611.71)		277.25 (682.27)		147.48 (336.32)	
	비자가	-23.70 (532.39)		74.63 (223.24)		200.24 (416.13)	
	t/ x ²	-1.90		3.34*		0.92	
직업	전문·관리직	-695.22 (3035.46)		695.76 (1124.47)	a	157.89 (367.10)	
	사무·판매 서비스직	49.45 (349.51)		200.36 (581.87)	b	199.21 (471.14)	
	농어업직	-6.68 (32.72)		94.49 (183.95)	b	122.67 (311.18)	
	기능·기술직	-484.16 (2167.07)		105.86 (315.25)	b	143.10 (321.11)	
	단순노무직	53.35 (173.43)		130.47 (246.66)	b	150.44 (438.99)	
	F	2.24		7.90***		0.31	
고 용 형 태	정규	-500.57 (2480.59)		433.33 (872.52)		160.10 (373.35)	
	비정규	-1.62 (253.48)		120.24 (241.03)		129.87 (422.44)	
	t/ x ²	-2.03*		3.34***		0.44	

* *P<0.05, **P<0.01, ***P<0.001

<표10> 은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자산액 변화분에 관한 분석 결과 이다.

교육수준과 부채는 대체로 부적인 관계를 갖는다고 많은 선행연구에 나타났다(Steidle, 1994; Lin & Devaney, 1996; 문숙재 외, 1996). 본 연구에서는 금융부채 증가의 경우 은퇴시점에 비해 은퇴 5년후 평균 약 610만원이 증가하여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부채가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거주외부동산 역시 대졸이상의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부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고소득으로 부채 이용의 기회가 증가하는 반면 부채획득 보다 높은 교육수준이 소비 자제력을 향상시켜 부채이용을 감소시킨다고 하는 것과는 상반되는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는 부동산 부채는 거주 보증금과 타인에게 임차를 준 거주외 임대보증금을 포함 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부채의 증가는 거주외부동산의 임대보증금 일 것으로 예측되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금융부채와 부동산 부채의 증가로 총자산 역시 교육수준이 낮은 집단보다 대졸자 집단이 증가한 것으로 사료된다. 은퇴5년 후의 자가보유자가 자가 미보유자 보다 임대보증금자산 변화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가 보유자가 은퇴 5년후 시점에 비해 임대보증금 자산변화분이 증가하였고 자가 미보유자는 임대보증금 자산이 은퇴시점보다 은퇴 후에 감소하여 자가를 보유한 집단의 변화분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자산 변화분 비교

(n=288)

변수	△ 금융자산		△ 임대 보증금		△ 거주 부동산 시가		△ 거주 외 부동산 시가		
	평균(S.D)	D	평균(S.D)	D	평균(S.D)	D	평균(S.D)	D	
성별	남	302.42 (5449.05)		438.10 (3368.37)		2205.63 (12776.51)		904.04 (12316.37)	
	여	324.25 (3660.47)		191.03 (2246.40)		4149.01 (19485.98)		935.21 (6765.86)	
	t/ x ²	-0.39		0.69		-0.83		-0.02	
교육수준	중졸 이하	0.48 (2696.09)		135.02 (1885.97)		3402.02 (16092.96)		-336.12 (5699.14)	b
	고졸	1253.43 (6019.78)		484.95 (4077.22)		1630.84 (11629.42)		4593.42 (12606.59)	a
	대졸 이상	754.25 (9035.55)		1091.72 (4824.99)		3714.00 (22021.02)		3461.46 (21010.55)	ab
	F	1.48		1.17		0.16		4.38*	
배우자유무	무	102.97 (2130.92)		41.37 (1759.90)		2436.21 (9398.83)		493.10 (3610.16)	
	유	426.25 (5592.58)		471.81 (3337.04)		3565.63 (19258.11)		1177.49 (12360.10)	
	t/ x ²	-0.67		-1.37		-0.55		-0.58	
자가보유여부	자가	568.56 (5461.32)		702.27 (3172.0)		2712.50 (18373.09)		1046.06 (12087.66)	
	비자가	-488.11 (2754.59)		-557.49 (2572.58)		4069.84 (11570.80)		13.18 (593.65)	
	t/ x ²	1.50		2.89**		-0.54		0.94	
직업	전문·관리직	803.09 (6202.15)		693.35 (3635.13)		3467.33 (20932.35)		2889.15 (9026.39)	
	사무·판매 서비스직	-36.69 (4252.41)		-190.46 (3058.10)		5050.78 (24419.78)		1035.86 (12152.46)	
	농어업직	51.68 (2629.96)		157.93 (550.60)		1089.63 (3924.73)		-2922.13 (12192.18)	
	기능·기술직	809.55 (6505.24)		514.25 (2438.39)		2802.86 (9309.93)		829.05 (5087.39)	
	단순노무직	75.94 (1739.62)		101.93 (1580.16)		3121.57 (5952.41)		301.43 (1647.82)	
	F	0.42		1.02		0.28		1.33	
고용형태	정규	720.32 (6454.39)		588.73 (2509.54)		2802.14 (15383.77)		739.74 (9675.22)	
	비정규	63.76 (1864.35)		-155.60 (1865.39)		2820.68 (7121.35)		189.53 (2702.68)	
	t/ x ²	0.95		1.83		-0.00		0.36	

* *P<0.05, **P<0.01, ***P<0.001

<표 10계속>

(n=288)

변수		Δ 금융부채		Δ 부동산부채		Δ 순자산	
		평균(S.D)	D	평균(S.D)	D	평균(S.D)	D
성별	남	783.01 (9488.50)		1685.93 (14343.62)		5337.72 (35496.89)	
	여	422.68 (3789.0)		207.54 (2963.03)		6417.95 (21389.84)	
	t/x^2	0.39		1.13		-0.29	
교육수준	중졸이하	-50.83 (3127.70)	b	248.13 (4429.61)	b	4060.59 (16193.50)	
	고졸	868.80 (6072.87)	b	288.24 (3528.54)	b	10216.29 (20547.29)	
	대졸이상	3739.48 (17261.58)	a	5633.77 (26611.17)	a	9704.69 (69102.40)	
	F	4.05*		3.72*		1.12	
배우자유무	무	127.22 (2058.10)		472.23 (4471.44)		3446.31 (16631.52)	
	유	881.25 (9016.78)		1249.74 (12654.23)		7151.73 (34613.58)	
	t/x^2	-1.03		-0.53		-1.17	
자가보유여부	자가	753.07 (8990.95)		1466.99 (13216.12)		6511.13 (36224.35)	
	비자가	752.59 (2804.54)		-224.18 (2177.42)		2513.87 (9737.32)	
	t/x^2	0.0		1.52		1.31	
직업	전문·관리직	3565.48 (16832.69)		4504.86 (23442.43)		8813.69 (64879.39)	
	사무·판매서비스직	309.77 (4599.78)		-86.73 (8699.72)		7312.08 (25916.60)	
	농어업직	-873.65 (3599.75)		841.66 (3646.47)		2550.12 (11873.14)	
	기능·기술직	185.98 (3705.42)		225.09 (3111.86)		6051.92 (14263.71)	
	단순노무직	915.10 (3235.27)		178.65 (1322.82)		2713.68 (6893.81)	
	F	2.04		1.30		0.41	
고용형태	정규	1426.48 (10549.97)		1690.90 (15570.23)		7106.67 (41395.08)	
	비정규	547.98 (2735.81)		52.62 (2032.73)		2654.81 (6781.90)	
	t/x^2	0.55		0.71		1.07	

* *P<0.05, **P<0.01, ***P<0.001

V. 결론 및 제언

1. 요약 및 결론

은퇴는 개인 및 가계에 있어 많은 경제적·심리적 변화를 경험하게 하는 생애사건 이다. 특히 근로소득원의 상실이라는 문제 때문에 가계는 소비지출 감소하게 되며, 자산축적을 하기가 어렵게 된다. 과거 은퇴에 관한 연구들이 은퇴가계의 노후준비를 위한 준비자금과 적정성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최근에는 은퇴 이후 소득과 소비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자산변화의 양상과 부의 축적이 은퇴이후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고 조기은퇴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은퇴 이후 노후생활기간은 더욱 늘어났다. 은퇴시점에 비해 은퇴이후 소득과 자산이 얼마나 어떻게 변화하였는지에 관한 양상을 분석하는 것은 은퇴를 맞이하는 가계가 은퇴이후의 삶을 보다 더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준비하기 위해 의미있는 일이라 하겠다. 은퇴를 근로소득이 단절되어 생활유지가 어려워지는 시기라고 보는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은퇴이후 삶의 재정적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은퇴전·후의 자산과 소득의 변화, 소득의 형태 등은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은퇴전·후 소득과 자산액에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파악하고자 한국노동패널(1차~10차)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은퇴 하였다고 응답한 288가계를 대상으로 은퇴시점과 은퇴 5년후의 소득변화와 자산변화를 차이를 알아보았고, 실질적인 물가상승 비율을 반영했을 때, 은퇴시점과 은퇴 5년후 실질소득과 실질자산액의 차

이를 비교하며, 나아가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주된일자리 특징에 따라 소득과 자산변화가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주요 결과에 대한 요약 및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은퇴시점과 은퇴 5년후 전체응답자와 보유자간의 소득과 자산액 차이는 어떠한지에 대한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조사 대상자의 은퇴시점과 은퇴 5년후의 소득과 자산액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개인근로소득은 은퇴시점이 약 1,199만원에서 은퇴 5년후 약 158만원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타가구원의 근로소득, 자산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 기타소득, 생활비, 거주부동산 시가, 순자산 은퇴시점보다 은퇴 5년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개인근로소득만 유의하게 증가됨을 알 수 있다. 한편, 보유자를 대상으로 소득과 자산액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타가구원의 근로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 생활비, 거주부동산의 시가, 순자산 액이 은퇴 5년후 유의하게 감소하였고 기타소득만이 은퇴시점보다 은퇴후에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기타소득이 은퇴 5년후 감소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전체응답자와 보유자사이의 실질소득과 실질자산액을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은퇴시점에 비하여 은퇴 5년후에 물가가 17.7% 상승하였고, 2000년을 기준으로 두시점간의 소득과 자산액 차이를 분석한 결과 전체조사대상자의 개인근로소득은 은퇴시점에 약1,199만원으로 조사되었고 은퇴 5년후에는 약 134만원으로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순자산, 공적이전소득과 사적이전소득 둘다 은퇴 5년후 증가하였고, 기타소득은 은퇴시점 퇴직금 등의 일시적인 요소를 가진 금액으로 인해 은퇴 5년후 감소한 것으로 나

타났다. 한편, 보유자의 두시점간 소득과 자산액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기타소득만이 은퇴시점에 비해 유의하게 증가하여, 은퇴 5년후 기타소득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타가구원의 근로소득과 공적이전소득, 순자산의 경우 은퇴 5년후에 모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은퇴시점과 은퇴 5년후의 소득과 자산의 구성비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은퇴시점의 개인근로소득은 56.38%에서 은퇴 5년 이후에 5.83%로 감소하였고 나머지 타가구원소득, 공적이전소득과 사적이전소득, 자산소득 기타소득의 비율이 은퇴 5년 후에 확연하게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은퇴시점에 가계의 근로소득이 84.04%에 있던것에 비하여, 은퇴 5년후에는 35.93%로 크게 감소하였다, 이전소득의 경우 은퇴 5년후에 약 4배 정도 증가하였다. 공적이전소득은 은퇴시점에 3.19%에서 13.59%로 증가하였고, 사적이전 소득은 6.38%에서 23.30%로 증가하여 은퇴 후 전체 소득의 1/3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주된 일자리 특성에 따라 은퇴시점과 은퇴 5년후 사이의 소득과 자산 변화분을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여성이 남성보다 은퇴 5년후 개인근로소득 변화분이 유의하게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공적이전소득 변화액이 약 310만원이었고 여성은 약 122만원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즉, 은퇴 5년후에 더 많은 공적이전소득 변화액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에 따른 차이로는 대졸이상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은퇴시점보다 은퇴 5년후에 개인근로소득의 변화분이 더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가계총소득과 기타소득 역시 다른 중졸이하 집단이나 고졸자 집단에 비해 은퇴 5년후 크게 감소하였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공적이전소득은 은퇴 이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거주외 부동산 시

가는 은퇴시점보다 은퇴 이후에 고졸자 집단이 약4,593만원 정도 증가하였고, 다음으로 대졸이상 집단이 약 3,461만원 증가하였고, 중졸이하 집단만 은퇴시점보다 은퇴이후 약 336만원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금융부채와 부동산 부채 역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가 있는 응답자가 없는 응답자에 비해 개인근로소득의 감소가 유의하게 큰 것으로 나타났고 유배우자 집단의 자산소득과 공적이전소득이 무배우자 집단에 비해 은퇴 5년 이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퇴 5년후의 자가보유 여부에 따라 자가보유자 자산소득이 비자가 응답집단보다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또한 자가를 보유한 응답자가 공적이전소득 변화액 더 많이 증가하였다. 또한 거주 및 거주외 임대보증금 변화액은 비자가 응답자가 더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된 일자리 특성의 직업종류에 따른 변화액 차이는 개인근로소득의 경우 농어업직 종사자가 전문관리 직종에 비해 개인근로소득의 감소폭이 낮았다. 전문·관리직종의 종사자는 자산소득 변화액과 공적이전소득 변화액이 다른 직종에 비해서 변화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과 자산의 변화는 주된 일자리 특성과 관련이 깊는데 특히, 고용상태가 비정규직인 응답자의 개인근로소득 변화액과 기타소득 변화액, 임대보증금 자산 변화액이 정규직 응답자보다 적었다. 반면 금융자산 변화액과 자산소득변화는 비정규직 집단이 크게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본 연구는 은퇴를 경험한 가계의 소득과 자산액의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앞으로 은퇴를 맞이하게 될 중·고령자 가계와 은퇴를 경험한 가계에 소득과 자산액 변화를 예측이 가능하게 하고, 재무

설계의 지표가 되고 노후생활 유지를 위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는데 의의가 있다. 과거에 비해 은퇴시기가 점점 빨라지고 있는 시점에서 은퇴가계들이 가계의 소득과 자산변화 과정을 통해 경제적으로 은퇴를 준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를 통해 은퇴집단과 은퇴 5년후 집단이 가진 특성을 조명하고, 이들 집단의 은퇴 후 경제적 복지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방안에 대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는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과거에 비해 은퇴 후 노후기간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은퇴가계가 은퇴 후 소득과 자산변화를 예측하고 노후를 설계를 하는 과정을 통해 경제적·심리적으로 노후생활을 준비해 나갈수 있도록 이들의 소득과 자산변화에 분석에 대한 구체적이고 총체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2. 제언

본 연구에서는 은퇴시점과 은퇴 5년후의 소득과 자산 분석을 통해 은퇴시점과 은퇴 5년후 집단간 소득과 자산의 차이에 따라 몇가지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이를 토대로 은퇴시점 집단과 은퇴 후 집단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주목할 필요성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첫째, 은퇴시점의 소득구성은 근로소득에 집중되어 있으며, 근로소득 중에서도 2/3이상이 근로자 본인소득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은퇴를 할 경우, 소득원이 하나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은퇴 후 노후

생활을 유지하기가 어려워 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은퇴 전에 근로소득의 원천을 다양화 시켜 은퇴 이후 안정적인 소득원천을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은퇴 5년후의 소득구성을 살펴 본 결과, 자산소득이 14.56%, 기타소득이 12.62%, 본인의 근로소득이 5.8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을 제외한 타가구원의 근로소득이 30.10%, 공적이전소득이 13.59%, 사적이전소득이 23.30%로 은퇴 후 소득원의 약 66%정도가 가족이나 친지에게 의존해야 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즉, 은퇴 후 노후생활을 가족이나 친지가 개인적으로 감당해야 하는 부분이 늘어날 것이다. 이 지원은 지속성의 여부가 보장되지 않은 상당히 불안정한 소득이기 때문에 은퇴 후에도 은퇴자가 다른 근로소득을 찾거나 공적부조에 의한 노후 생활의 보조가 필요하다.

공적이전소득과 사적이전소득의 증가는 은퇴 후의 노후생활 유지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회 제도적인 차원에서 은퇴자의 재취업을 확대하거나 은퇴 후 안정적인 소득원을 위한 다양한 소득원 확보가 시급하다.

셋째, 은퇴 5년후의 자산구성을 보면, 거주 부동산 비율과 거주외 부동산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 표현된 자산구성비는 자산에서 차지하는 액수만 가지고 측정한 것이기 때문에, 은퇴시점에 비해 은퇴 5년후의 거주부동산의 시가와 거주외 부동산 시가의 차이 비율이 늘어난 것으로 알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5년간의 부동산 시장의 전반적 상승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부동산 보유가계의 부동산 액수가 높게 나타난 것은 이를 증명하는 것이라 사료된다. 부동산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면, 유동성비가 떨어지기 때문에 노후에 장기적인 현금흐름을 창출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한

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 저축을 위한 금융자산 축적과 노후생활에도 투자가 가능한 저축성 보험의 비중을 늘려나갈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에서 인구사회학적 변수에 따른 은퇴 5년후와 은퇴 시점의 소득과 자산의 변화액을 살펴본 결과 남성이 여성에 비해 근로소득 변화액이 유의하게 감소하였고, 공적이전 소득은 증가하였다. 보통 가계는 가구주 근로소득에 치우쳐있기 때문에 개인근로소득이 유의하게 줄어든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남성의 근속수명이 여성에 비해 길고, 남성의 고용안정성이 여성보다 상대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사회적 배경에 기인한다 할 수 있다. 은퇴 후 소득보장을 위해 가구주의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지원이 필요한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교육수준이 높은 응답자일수록 원래 소득수준이 높았기 때문에 은퇴 후 근로소득의 변화의 폭이 컸다. 그러나 교육수준이 낮은 응답자들은 은퇴 전 소득수준이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퇴 후에 더 근로소득이 낮아진것은 이들 집단에 대한 좀 더 집중적인 연구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대졸이상의 응답자의 근로소득이 은퇴 후 많이 줄었고 부동산 자가보유율이 유의하게 증가한 것은, 은퇴전 자산액이 많았다는 증거이다. 그러나 이들의 부동산자산 차지 비율이 높은 것으로 인해 노후생활 유지자금은 부족하고 높은 세율의 세금이 징수되는 집단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들의 은퇴후 자산포트폴리오를 재구성 할 수 있도록 재무교육 과정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은퇴 전 전문관리직 직종 종사자는 은퇴후에 근로소득이 낮아졌지만 자산소득은 증가 한 것으로 보아 이들은 은퇴전부터 상대적으로 다른 집단에 비해 은퇴 준비가 잘 되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비정규직 근로자는 정규직에 비해 소득은 상대적으로 적게 감소했지만 은퇴 전 소득수준이 전반적으로 낮았기 때문에 감소폭 역시

적었던 것으로 생각 할 수 있다.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금융자산 증
가분이 유의하게 낮았으므로 비정규직의 노후생활보장을 위한 공적
부조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하겠다.

본 연구에는 몇 가지 한계점이 포함되어 있다. 먼저 본 연구의 조
사대상이 되었던 자료에서 은퇴자 선정의 경우, 매년 조사된 개인자
료와 가구자료에는 은퇴시기에 대해 정확한 질문이 존재하지 않았다.
은퇴시기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부가자료를 이용한 샘플선정은 한
해에 동일하게 조사된 것이 아니므로 원자료를 찾아 부합시켜 분석
하는 것에 있어 무응답으로 인해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패널데이터
의 특성상 10년동안 응답하고 있는 응답자를 찾기란 쉽지 않았다. 또
한 동일한 질문이 연속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단절되어, 명확한 정보
를 보유한 응답자만 추출하게 되어 상당수의 표본이 제외되었다. 또
한 소비와 지출, 자산과 부채 항목을 세부적으로 분석하고 싶었지만
자료의 제한으로 인해 항목별로 살펴보지 못한 점도 아쉬움으로 남
는다.

본 연구에서는 은퇴시점과 은퇴 5년 후의 단기적인 시기로 소득과
자산의 변화를 살펴보았지만 노후생활이 점차 길어짐에 따라 장기적
인 기간 후에도 은퇴시점 이후 기간별로 살펴 논의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참 고 문 헌

- 경향신문(2008). 한국여성 출산율 1.2명 193개국 중 꼴찌, 2008. 5. 22.
- 강석훈(1998). 우리나라 가구의 금융자산 보유실태 종합분석. 통계청.
- 권문일(1996). 고령자의 퇴직 및 퇴직후 근로행태 결정요인. 사회복지연구, 8, 41-67.
- 김관영(1989). 가계자산축적경로에 대한 고찰. 한국개발연구, 11(3), 131-146.
- 김경아(2007). 국민연금이 노년층이 소득빈곤과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NPS국민연금연구원, 연구보고서 2007(10).
- 김상호(2005). 연금자산이 가계저축에 미치는 영향: 대체효과에 대한 이론적 실증적 연구. 경제학연구, 53(4), 47-65.
- 김성숙, 박운아(1992). 도시가계의 경제적 노후준비행동과 관련요인 연구. 소비자학연구, 3(2), 45-57.
- 김순미(1998). 재무계획수립을 위한 노인가계의 재정상태분석. 대한가정학회지, 36(10), 179-197.
- 김인숙(1993). 농가의 노후의 경제적 요구와 대비수준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지경(2004). 은퇴자의 은퇴사유 및 은퇴 후 소득 원천. KLIPS Research Brief, 8, 한국노동연구원.
- _____ (2005). 성별은퇴사유와 은퇴 후 소득비교. 사회보장연구, 21(2), 55-76.
- 김진영(2002). 대우패널 자료를 통해 본 1990년대 가계의 자산구성 변화. 재정논집, 17(1), 47-74.
- 김연정(1998). 은퇴노인가계와 취업노인가계의 소득, 지출 및 자산의

- 비교분석. 대한가정학회 36(7), 58-67.
- 김영숙(2002). 도시 빈곤노인 가계의 경제적 생활수준에 관한 연구; 일반가계, 일반노인가계 및 빈곤노인 가계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소비자학연구, 13(3), 95-119.
- 김익기 외(1999). 한국 노인의 삶: 진단과 전망. 미래인력연구센터.
- 김태일(2007). 공적연금이 노후 소득에 미치는 효과분석. 정부학연구, 13(1), 191-214.
- 남상호, 권순현(2008). 우리나라 중고령자 가구의 자산분포 현황과 빈곤 분석: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자료를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28(2), 3-32.
- 대한상공회의소(2006). 직장인 노후대책에 관한 실태조사.
- 문숙재, 김순미, 김연정(1996). 노인가계와 비노인가계의 재정상태 비교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3), 223-235.
- 문숙재, 김연정(1997). 가계의 개인연금 보유여부와 불입액의 영향요인 분석. 대한가정학회지, 35(5), 265-277.
- 문숙재, 정순희, 여윤경(2002). 가계순자산 규모의 결정요인. 소비자학연구, 13(3), 169-188.
- 배무기(1975). 서울 근로자 가계의 저축행태, 한국의 민간저축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 문화일보(2009). 전세계 급속히 늙어 간다 IMF 유엔도 한국고령화 속도 심각한 수준, 2009. 7. 21.
- 박경숙(2000). 노동시장의 연령차별구조와 고 연령층의 취업생활. 노동경제논집, 23, 241-263.
- _____ (2001). 중장년기 종사상 지위와 은퇴 과정의 다양성. 노동경제논집, 24(1), 3, 177-205.

- _____ (2003). 55세 이상 고령자의 노동시장 이탈과정 은퇴-비취업 경제에 대한 함의. 제 4회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자료집, 271-203.
- 박창균(2003). 고령화의 진전과 자산수요의 변화. 인구구조 고령화의 경제적 영향과 대응과제(1), 한국개발연구원.
- 방하남, 강석훈, 신동균, 안종범, 이정우, 권문일(2009). 점진적 은퇴와 부분연금제도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 배문조(2009). 중년기 성인의 노인에 대한 태도와 노후준비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29(3), 1107-1122.
- 백은영(2008). 은퇴 후 소득 적정성 및 지속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사회보장연구, 24(2), 27-51.
- 범수인, 문숙재(1992).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가계의 투자계획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0(1), 199-217.
- 보건복지가족부(2008).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실태조사.
- 세계일보(2008). 한국인 평균수명 79.1세, 2008. 7. 25.
- 삼성경제연구소(2007). 소비자태도조사, 2007 4/4분기 부가조사- 노후 대비에 대한 가계조사.
- 심영(2000). 단독가계 노인소비자의 소득, 자산, 소비지출 분석. 소비문화연구, 3(1).
- 석재은, 김태완(2000). 노인의 소득실태분석 및 소득보장체계 개선방안. 사회보장연구, 21(1), 51-78.
- 성영애(1994). 미국 은퇴 가계의 경제적 복지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2(4), 31-43.
- 안순필(1984). 도시 가계의 저축행태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안종범, 전승훈(2003). 은퇴자 가구의 소득과 소비. 제4차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자료집, 한국노동연구원.
- _____ (2004). 은퇴결정과 은퇴 전·후 소비의 상호작용. 한국노동경제학회, 노동경제논집, 27(3).
- _____ (2005). 은퇴자가구의 적정소득대체율. 한국경제연구, 제15권, 5-33.
- 양세정, 성영애(2001). 노인가계의 경제구조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1), 173-190.
- 양정선, 김순미(1992). 체계론에 기초한 도시가계의 재정상태 분석. 대한가정학회지, 30(1), 237-255.
- 여윤경(2005). 한국 중산층 가계의 노후자금 적정성. 한국노년학, 25(1), 21-36.
- _____ (2006). 역모기지의 노후소득 효과. 소비자학연구, 17(1), 177-197.
- 여윤경, 김진호(2007). 한국가계의 은퇴자산 적정성 판단을 위한 시뮬레이션 분석. 금융연구, 21(2), 1-30.
- 유우정(2005). 노인가계의 포트폴리오 구성 및 재정비율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계식(1986). 도시가계의 저축행태분석. 한국개발연구, 8(4), 16-40.
- 이정원(2006). 정년은퇴 여부에 따른 경제적 격차와 정년은퇴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30, 71-99.
- 이정현(1994). 도시가계의 저축·자산 선택행동에 관한 실증적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지영, 최현자(2009). 우리나라 은퇴자의 은퇴자금 충분성과 영향요인. 한국노년학, 29(1), 215-230.

- 이지은(2000). 중년기 직장남성의 노후생활계획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철용(2006). 노후자금 부담, 미국 일본보다 크지 않다. LG주간경제, 2006. 11 (1).
- 이희숙, 신상미(2003). 은퇴노인가계의 경제구조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1(4), 103-113.
- 임경목(2002). 한국 가계금융자산 구성의 결정요인 분석: 주식보유를 중심으로. 한국개발연구원 정책연구시리즈, 2002-04, 27.
- _____ (2004). 한국가계의 주식시장 참가 결정요인 분석. 한국개발연구원, KDI 정책연구, 26(1).
- 임재용(2008). 중장년층의 직업별 노후준비에 대한 비교 연구. 목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지연(2002). 고연령근로자의 경제활동과 은퇴. 한국노동연구원, 고령화시대의 노동시장정책에 관한 국제세미나 발표논문.
- 장지연, 호정화(2002). 취업자 평균 은퇴연령의 변화와 인구특성별 차이. 노동정책연구, 2(2), 1-21.
- 정순희, 김현정(2002). 소득, 지출 및 자산 충분성 분석을 통한 취업노인가계와 비취업노인가계의 재정상태 비교.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2), 113-122.
- 정은주, 문숙재(1992). 가계투자행동의 인과적 모형 분석. 대한가정학회지, 30(1), 219-235.
- 조용수, 김기승(2007). 우리나라의 연령별 빈곤실태와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연구. 사회보장연구, 23(3), 101-124.
- 조희금(1984). 가정생활주기에 따른 가계의 저축행태 분석: 대구시 주부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1), 57-66.

- 차경옥, 박미연, 김연주(2008). 20, 30대 임금근로자의 은퇴재무설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6(1) 149-163.
- 최보아, 지영숙(2004). 은퇴자의 생활설계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6), 47-61.
- 통계청(2000). 도시가계연보 2000.
- 통계청(2004). 인구주택총조사 2004.
- 통계청(2006). 장래인구추계 2006.
- 통계청(2007). 장래인구추계 2007.
- 통계청(2008). 고령자통계 2008.
- 통계청(2009).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청년·고령층).
- 한희자, 강은실(2001). 은퇴자들의 은퇴 후 삶의 상태변화. *정신간호학회지*, 10(2), 203-219.
- 한국인구보건연구원(1987). 한국가족구조의 변화.
- 한국노인문제연구소(1993). 노인생활실태조사. 홍익재.
- Abbot, J.(1977). Socioeconomic Characteristic of the Elderly: Some Black-White Difference. *Social security Bulletin*, 40, 16-42.
- An, C.B. & S.H. Jeon(2003). Measuring the Optimal Income Replacement Rate: A Panel Data Analysis. *The 59th Congress of ILPF*.
- Ando, A. & Modigliani, F. (1963). The life cycle hypothesis of saving: Aggregate implication and tests.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53(1), 55-84.
- Atchley, R. C.(1976). Retirement and work Orientation. *The Gerontologist*, 11, 29-32.
- Banks, J. R. Blundell, and Sarah Tanner(1998). Is There a

- Retirement--Savings Puzzle?. *American Economic Review*, 88(4), 769-788.
- Burtless, G. and R. Moffitt(1985). The Effect of Social Security Benefits on the Labor Supply of the Aged. *Retirement and Economic Behavior*, 13-174.
- Bernheim, D., J. Skinner, and S. Weinberg(2001). What Accounts for the Variation in Retirement Wealth Among U.S. Households?. *American Economic Review*, 91(4), 832-857.
- Cohen, R., Lewellen, W.G., Lease, R. and Schlumbauma, G. G.(1975). Individual Investor Risk Aversion and Investment Portfolio Composition. *Journal of Finance*. 30th of May, 605-620.
- Campbell, Colin, & Rosemary & Campbell(1976). Conflicting Views on the Effect of Old-Age and survivors Insurance on Retirement Economic Inquiry, 14(3), 369-388.
- DeVanney, S.A(1994). The usefulness of financial ratios as predictors of household insolvency: The perspectives.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5, 5-24.
- Fields, Gray and Olivia Mitchell(1984). *Retirement, Pensions, and Social Security*, Cambridge, The MIT Press.
- Grad, S.(1990). Earnings replacement rates of new retired workers. *Social Security Bulletin*, 53(10), 2-8.
- Hardy, A.(1980). *The Structure of Retirement: A Longitudinal Study of Socioeconomic factors That Influence. The Retirement Decisions Of Older Males*, Indiana University, Phd.
- Haveman, R, Holden, K., Wolfe, B., & Shane Sherlund(2006).

- DoNewly Retired Wokers in the U.S. Have Sufficient Resources to Maintain Well-being?. *Economic Inquiry*, 44(2), 249-264.
- Kennickel(1994). Multiple Imputation of the 1993 and 1989 Waves of the SCF. Working Paper. Federal Reserve Board.
- Leno, J. A.(1985). Recursive Model of Economic well-being in Retirement. *Journal of Genotology*, 40(4), 494-505.
- Lin, F. & Devaney, S.(1996). Factors Affecting Families Consumer Debt Burden. *Consumer Interest Annual*, 141-148.
- Mitchell, W.(1972). Lay Observations on Retirement, in F.M. Carp (ed.), *Retifment*, New York : Behavioural Publications.
- Maxwell, N.L.(1986). The Effect of Human Capital and Labor Market Segmentation on Retirement Income; A Policy Analysis, *Social Science Quarterly*, 67(11), 53-68.
- Moehrle(1990). Expenditure Patterns of the Elderly: Workers and Nonworkers. *Monthly Labor Review*, 113(5), 34-41.
- Parnes, Admas, Andirsani, Kohen, and Nestel, G.(1974). *The Pre-Retirement Years: Five Years in the work lives of Middle-Aged Men*, Center For Human Resource Research, The Ohio State Uni.
- Ramaswani, S.N. Srivastava, R.K. & McNish T.H.(1992). An exploratory study of portfolio objective and asset holdings. *Journal of Economics Behavior and Organization*, Vol 19. 285-306.
- Rubin, R. Nieswiadomy, M.(1994). Expenditure Patterns of Retired

- and Nonretired Person. *Monthly Labor Review*, April, 10-21.
- Schulz, J.H.(1992). *The economics of aging*. 5th. Auburn House.
- Steidle R. E. P.(1994). Determinants of Bank and Retail Credit Card Revolvers: An Application Using Life-Cycle Income Hypothesis. *Consumer Interest Annual*, 170-177.
- Tibbits, C.(1954). Retirement Problems in American Society. *Th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59(4), 301-308.
- Torrey, B.B & Taeuber, C.(1986). The importance of Asset Income Among the Elderly. *Review of Income & Wealth*, 32, 443-449.
- Weagley, R.O. & Gannon, C.F(1991). Investor portfolio allocation.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2, 131-154.
- Wang, H. Mok, C.J. & Fox, J(1995). Food expenditure patterns of elderly consumers: a question of time allocation. *FERM Biennial*, 185-191.
- Yuh, Y., & DeVaney, S.A.(1996). Determinants of couple's defined contribution retirement funds. *FCP* 7, 31-39.

ABSTRACT

The Economic Status of Retired Households

- Retirement time VS. 5years later -

Kim, Sun-hee

Dept. of Family Culture & Consumer Science,

The Graduate School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e purpose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conomic status of retired households. This study compared property status between retirement time and 5years later. The data were drawn from the data of 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KLIPS) conducted by the Korea Labor Institute. To analyze the change of property for 5 years, the total of 288 samples were selected from 1999 to 2002. Samples were analyzed by Frequency, percentage, average, standards deviation, t-test and ANOVA.

The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5years later the earned income were lower than retirement time. But an except a respondent earned income, an asset income, a public and private income, a market value of residence, a net worth increased.

Second, when the inflation was reflected 5years later Consumer prices rose by 17.7% than retirement time. An earned income and a

temporary income decreased. But only a public and private income and a net worth increased.

Third, compare ratio of income and property between retirement time and 5 years later, earning income decrease from 56.38% to 5.83%. Besides real estate ratio among worth was too much.

Fourth, there ar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retirement time and 5 years later by gender education, type of job, type of employment .